



2021.12.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세법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Key Points of the Examination of the 2021 Tax Act Revision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총괄 |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태정림, 백수연, 김효경, 박지원, 이겨레
김태민,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지원·편집 | 박은주, 이지은, 김혜원 행정실무원
장정현, 박소영, 정선미 자료분석지원요원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2021. 1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국회 세법심사는 총 240건의 심사대상 안건에 대해 약 한달에 걸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법개정안이 성안되었고, 12월 2일과 9일에 걸쳐 국세 관련 세법 1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과정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수반하는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일러두기

1. '소득세'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개정 항목임
 2.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개정 항목임
 3.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과세 분야 개정 항목임
 4. '재산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개정 항목임
 5. '기타'는 「관세법」과 국제조세 분야 개정 항목임
 6.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의원안'으로,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7. 본 보고서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1년도) 대비 증감한 세수를 합산한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임
 8. 본 보고서의 '현행'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하며, '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

차 례

I. 개 관 / 15

1.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17
2. 「2021년 세법개정안」 처리과정	21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24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26
5. 주요 심사 쟁점	28
가. 개 관	28
나. 쟁점 심사안건	28
6. 의원발의안 반영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33
7. 향후 논의 과제	35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39

1. 국세기본법	41
가. 총 괄	41
나. 주요 논의 사항	42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46
가. 총 괄	46
나. 주요 논의 사항	47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61
가. 총 괄	61
나. 주요 논의 사항	62

차 례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과세 분야 등) ...	80
가. 총 괄	80
나. 주요 논의 사항	81
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91
가. 총 괄	91
나. 주요 논의 사항	92
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	100
가. 총 괄	100
나. 주요 논의 사항	100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 105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	107
가. 「국세기본법」	107
나. 「소득세법」	107
다. 「법인세법」	108
라. 「부가가치세법」	108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8
바. 「조세특례제한법」	109
사. 「증권거래세법」	110
아. 「관세사법」	111
자. 「관세법」	111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	116
가. 「소득세법」	116
나. 「법인세법」	117
다. 「부가가치세법」	117
라. 「개별소비세법」	117
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18
바. 「조세특례제한법」	118
사. 「관세법」	120

IV. 부대의견 및 기타 사항 / 125

1. 부대의견 채택 안건	127
가. 「소득세법」 1건	127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건	127
다. 「조세특례제한법」 6건	128
라. 「관세법」 3건	129
2. 기타 사항	132
3. 기타 추후 논의 과제	144

부 록 - 확정된 2022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 147

1. 2022년 총수입	149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150
가. 총수입	150
나. 국세수입	151
다. 세외수입	152
라. 기금수입	152

표 차 례

[표 1]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18
[표 2] 2021년 세법개정안 처리현황(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3
[표 3]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내용	25
[표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2~2026년	26
[표 5]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추계	26
[표 6]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27
[표 7] 가상자산 소득분류 변경 및 과세시행 시기 유예안	28
[표 8]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주요 심사의견	29
[표 9]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 개정안	29
[표 10]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 비과세기준 상향 관련 주요 심사의견	30
[표 11]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상향 개정안	31
[표 12]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의견	31
[표 13]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32
[표 14]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33
[표 15]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34
[표 16] 공동상속자 납세의무 범위조정 개정내용 비교	42
[표 1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안 및 개정내용 비교	43
[표 18]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개정연혁	43
[표 19]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44
[표 20]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47
[표 21]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49
[표 2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50
[표 2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51
[표 24] 기부금 공제 개정연혁	51

[표 25]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52
[표 26]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54
[표 27] 소득세 개정 내용	55
[표 28] 국가전략기술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3
[표 29]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3
[표 30]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5
[표 31]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68
[표 3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70
[표 3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72
[표 34] 법인세 개정 내용	73
[표 35]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81
[표 36]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변화	81
[표 37]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연장안 및 개정내용 비교	82
[표 38]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및 개정내용 비교	83
[표 39]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84
[표 40]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연혁	84
[표 4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의 현행 및 개정안 비교	85
[표 42]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86
[표 43]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87
[표 44]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및 개정내용 비교	92
[표 45]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요건 연혁	93
[표 46]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안 및 개정내용 비교	94
[표 47] 영농상속공제 한도 연혁	94
[표 4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96

표 차 례

[표 49] 재산과세 개정 내용	98
[표 50] 기타 국세 개정 내용	102
[표 5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대안반영	112
[표 52]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121
[표 53] 부대의견 채택 안건	130
[표 54] 미반영 쟁점 항목	132
[표 55]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133
[표 56]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안	134
[표 57] 탄소세 도입안	135
[표 58] 기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주요 개정안	137
[표 59]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요건 연혁	137
[표 60] 기업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혁	138
[표 6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연혁	138
[표 62]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강화에 대한 주요 개정안	140
[표 63] 법인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 및 세율 연혁	141
[표 64]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한 주요 개정안	142
[표 65] 확정된 2022년 총수입 예산	149
[표 66] 2022년 총수입 변동 내용	150
[표 67] 2022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151
[표 68] 2022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152
[표 69] 2022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152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관 개

1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은 총 27개(세목을 신설하는 제정법안 2개 포함)이며 국세 23개, 지방세 4개로 구성

◦ 국세(23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청년세법(안)」, 「탄소세법(안)」

◦ 지방세(4개)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소관 위원회별 심사대상 안건은 국세 240건, 지방세 180건으로 총 420건

◦ 국세(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총 240건

- 정부안 16건, 의원안 224건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등

◦ 지방세(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총 180건

- 정부안 4건, 의원안 176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15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1) 이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 전체는 “의원안”, 개별 안건은 “대표발의자명+의원안”으로 표기

[표 1]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법률명	주요 현황
「국세기본법」 (9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정부안 (국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일치) 김주영 의원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윤후덕·민형배 의원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등 공개근거 신설) 김두관 의원안 (과세정보 공개사유 확대) 양향자·양경숙 의원안 (과세정보 기초자료 제공대상자 확대) 추경호 의원안
「소득세법」 (22건)	(소득세율 조정) 양경숙·태영호·이종배 의원안 (가상자산 과세시행 유예 등) 유경준·노웅래·윤창현·조명희 의원안 (2021년 지출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한시상향) 정부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유동수 의원안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김기현·정일영 의원안 (착오·누락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박형수 의원안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등) 추경호 의원안
「법인세법」 (2건)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신설) 정부안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변경) 정부안 (50%한도 법정기부금 대상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추가) 박홍근 의원안
「조세특례 제한법」 (131건)	- 소득세 관련 (근로·자녀장려세제 정비) 정부안, 박홍근 의원안 (ISA 과세특례 개편) 정부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윤준병·문진석 의원안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이명수·전용기·추경호·윤후덕 의원안 - 법인세 관련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지원 강화) 김경만·홍정민 의원안, 정부안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구자근·김경만·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등) 김경만·이용·추경호·지성호 의원안, 정부안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김수흥·이용·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김수흥·김경만·김상훈·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이광재 의원안, 정부안 - 소비세 관련 (농협 전산용역공급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정점식·김주영·홍문표·김민철·김수흥·이달곤·유경준 의원안, 정부안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환급한도 조정) 전주혜·이병훈·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법률명	주요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건)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등) 정부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김수흥 의원안, 정부안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등) 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양금희·구자근·김경만·정일영 의원안 (영농상속공제 한도상향 등) 장제원·이원택·추경호 의원안 (영농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정성호·이원택 의원안 (물납요건 강화 및 물납시 양도소득세 부과) 양경숙 의원안 (문화재 미술품 물납허용) 박정 의원안
「종합부동산세법」 (3건)	(합산배제임대주택 상향입법,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부여) 추경호 의원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고용진 의원안 (공공임대주택 및 일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 박형수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12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등) 정부안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김원이·김철민·이해식·김영진 의원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등) 송갑석·김용판·김경만·문진석 의원안, 정부안 (여성위생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장혜영 의원안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확대) 윤후덕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9건)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정부안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 강병원 의원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변경) 이채익·양향자·윤영석·정청래 의원안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판매시점으로 변경) 김수흥 의원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제) 이장섭·고용진·박완주 의원안
「주세법」 (2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건)	(생맥주 세율경감 특례기한 연장) 김수흥 의원안, 정부안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의무 관련 상향입법) 정부안
「증권거래세법」 (1건)	(거래소의 주권매매 통지사항 상향입법) 양경숙 의원안
「농어촌특별세법」 (1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정부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건)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윤준병 의원안, 정부안

법률명	주요 현황
기타 세법 (21건)	「관세법」(9건), 「인지세법」(1건), 기타 절차법 등 11건(「국세징수법」(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1건), 「관세사법」(4건), 「세무사법」(1건))
제정안 (2건)	「청년세법(안)」(1건), 「탄소세법(안)」(1건)
지방세 분야 (180건)	「지방세기본법」(17건), 「지방세징수법」(6건), 「지방세법」(42건), 「지방세특례제한법」(115건)

2 「2021년 세법개정안」 처리과정

- 2021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40건의 세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
 - (2021.11.15.~11.29.) 조세소위원회는 총 240건의 세법개정안 심사
 - 조세소위원회(총7차): 11.15, 17, 19, 22, 24, 26, 29(매주 월/수/금 진행)
 - (2021.11.30.)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표결 진행(재석 14인, 찬성 12인, 반대 2인)
 - 위원회 제안·심사결과: 위원회안(대안) 11건, 원안 2건, 수정안 4건
-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경과
 - (2021.1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²⁾ 등 총 15건(정부안 14건, 의원안 1건)의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됨³⁾
 - (2021.11.30.) 「국회법」 제85조의3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이 입안된 총 10건의 법률안은 해당 대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⁴⁾
 - (2021.12.1.)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 국세 관련 「2021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 과정
 - 2021년 12월 2일 및 9일에 국세 분야 세법개정 법률안 17건(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포함)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 통과
 - (2021.1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국세 분야 법률안 14건은

2) 정부안 및 의원안이 각각 1건씩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됨

3)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건수는 총 17건이며, 비조세 관련 법률안 2건은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두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이 있음

4)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 분야 법률안 15건 중 10건의 법률안은 대안이 입안됨에 따라 해당 대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국회법」 제85조의3제5항)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가결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 자동부의 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21.12.9.) 그 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안)」 및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정부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가결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원안가결(2021.12.8.)

□ 지방세 관련 「2021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 과정

- (2021.11.3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대상 안건 총 180건⁵⁾
- (2021.12.7.)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3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
 - 위원회 제안·심사결과: 위원회안(대안) 3건
 - * 위원회안(3건):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1.12.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 (2021.12.9.)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 통과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제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은 180건과 별도로 2021년 9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정, 심사 후 위원회안(대안)으로 의결된 후 2021년 11월 11일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 의결됨

[표 2] 2021년 세법개정안 처리현황(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단위: 건수)

연번	법률명	기재위 심사대상 안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본회의 의결일자	본회의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의안)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2	12.2.	대안가결 (의원안 88+정부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17+정부안)
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1	12.2.	원안가결(정부안)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8+정부안)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1	12.2.	수정가결(정부안)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1	12.2.	원안가결(정부안)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3+정부안)
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1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	계류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8+정부안)
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1	12.2.	수정가결(정부안)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4+정부안)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1	12.2.	대안가결 (의원안 1+정부안)
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12.9.	수정가결(의원안)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	-	-
1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	-	-	-
1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	12.9.	수정가결(정부안)
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¹⁾	1	-	-	-
2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	12.9.	대안가결 (의원안 2+정부안)
22	청년세법안	1	-	-	-
23	탄소세법안	1	-	-	-
합계		240	15		

주 1) 2021.10.12. 김두관 의원안 기준(공직퇴임세무사 수입제한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1.11.11. 본회의(임시회)에서 가결)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물가·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납세자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 고지세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 기준금액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 등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1년 유예(당초 2022.1.1.)
- (법인세법)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신설,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
 - 사업 양수·도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 간접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선환급 후 배분시 원천징수하던 과세방식에서, 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하도록 개편
 - 배당소득은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이외 소득은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계에서 함께 공제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현행) 21% → (2022년) 23.7% → (2023년~) 25.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물납대상 확대 등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기준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물납 허용

-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세기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 원재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반입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공제 허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1.12.31. → (개정)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의 지급 요건인 소득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 상향조정

[표 3]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내용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공제율 신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액 한시적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고용분야 세제지원 확대
-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적용기한: (현행) 2021.12.31. → (개정) 감면 종료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⁶⁾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2~2026년 동안 5조 8,136억원(연평균 1조 1,62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⁷⁾

[표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22~'26 누적
누적법	-12,167	-13,617	-14,458	-14,863	-3,032	-11,627	-58,136
소득세	-6,021	-2,806	-2,855	-2,761	-2,655	-3,420	-17,098
법인세	-5,762	-11,981	-12,734	-13,179	91	-8,713	-43,565
부가가치세	-1,083	-146	-187	-227	-270	-383	-1,914
기타	700	1,316	1,318	1,304	-198	888	4,441
순액법	-12,167	-1,450	-841	-405	11,831	-606	-3,032
소득세	-6,021	3,215	-50	94	106	-531	-2,655
법인세	-5,762	-6,218	-753	-445	13,270	18	91
부가가치세	-1,083	937	-41	-40	-43	-54	-270
기 타	700	616	2	-14	-1,503	-40	-198

주: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세법개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소득세 -1.3조원),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법인세 -4.4조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재도입(부가가치세 -368억원)

[표 5]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추계

(단위: 억원)

세법개정 주요 항목	연평균	'22~'26 누적
(소득세)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	-2,628	-13,139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10,938	-43,751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92	-368

6) 본 장의 세수효과는 기준연도(2021년) 대비 증가한 누적세수를 세수효과로 선정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본으로 사용

7)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이며, 확정된 2022년 총수입 예산은 부록에서 다시 설명

-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국회 수정사항의 세수효과는 당초 세법개정안 대비 2022년 3억원 감소(2022~2026년 누적 -256억원)⁸⁾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에서 수정·확정된 사항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
- 소득세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⁹⁾: 5년간 -62억원
 - 법인세
 - 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5년간 -189억원
 - 부가가치세
 - 농협 및 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년간 -258억원
 - 기타
 -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감면 종료: 5년간 235억원

[표 6]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사항의 세수효과 변동내역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소득세	-	-12	-14	-17	-19	-62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12	-14	-17	-19	-62
법인세	-	-21	-42	-63	-63	-189
-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1	-42	-63	-63	-189
부가가치세	-50	-48	-47	-47	-47	-240
-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4	4	4	4	4	18
-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54	-52	-51	-51	-51	-258
기타	47	47	47	47	47	235
- 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개별소비세·교육세)	47	47	47	47	47	235
합계	-3	-34	-56	-80	-82	-256

주: 1.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효과를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8)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산정

9)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인상은 자료의 한계로 추정이 곤란하여 제외하고, 난임시술비만 세수효과에 반영

5 주요 심사 쟁점

가. 개 관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안건은 가상자산 과세시행 시기 유예안,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정부와 여·야간 견해차가 있는 쟁점 안건 포함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의원안으로 발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표결¹⁰⁾을 통해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으며, 본회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 진행

나. 쟁점 심사안건

- 가상자산 소득분류 변경 및 과세시행 시기 1년 유예
 - 관련 안건
 -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시행일 1년 유예(노웅래 의원안)
 - 과세시행일 1년 유예(윤창현 의원안), 과세시행일 2년 유예(유경준 의원안)
 - 과세시행일 1년 유예,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 과세최저한(5천만원) 설정 및 별도 세율(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25%) 적용(조명희 의원안)

[표 기] 가상자산 소득분류 변경 및 과세시행 시기 유예안

	현행	노웅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	조명희 의원안
소득분류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	-	기타소득
기본공제 (과세최저한)	250만원	5천만원	-	-	5천만원
세율	20%	20%/25% (3억원 이하/초과)	-	-	20%/25% (3억원 이하/초과)
과세시행	2022.1.1.	2023.1.1.	2023.1.1.	2024.1.1.	2023.1.1.

주: 노웅래 의원안(의안번호 2111370. 발의일 '21.7.6.), 윤창현 의원안(2110077, '21.5.12.), 유경준 의원안(2110127, '21.5.14.), 조명희 의원안(2112832, '21.10.13.)

10)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1.11.30.) 당시 표결 요청에 따라 표결 절차를 진행함

◦ 주요 심사의견

- (찬성 입장) 가상자산 거래정보 전송시스템, 법·제도적 정비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 과세대상자 안내 및 교육 등 충분한 숙려와 준비 필요
- (반대 입장) 2020년 투기열풍과 최근에도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코스피 수준에 육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유예 조치는 투기를 조장하는 신호가 될 우려

[표 8]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거래소 점검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일반 투자자의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합리적 과세를 위해서는 손익계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 - 과세시행 전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및 양도차익 신고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적 정비, 과세대상자 안내 및 교육 등 충분한 준비 필요
반대 의견	- 코스피 수준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거래규모를 감안할 때 가상자산 과세유예 조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음 - 작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감안

◦ 결론

-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안(의원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 비과세기준 인상 등

◦ 관련 안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기준 인상 및 상향입법(유동수 의원안)

- (기준인상)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 금액기준 상향(현행 9억원→12억원)
- (상향입법) 고가주택 가액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 가액을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상향
- (부칙)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표 9]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 개정안

	현 행	유동수 의원안
비과세 양도소득 제외대상	- 주택 가액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u> -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u> *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②, §155⑰: 9억원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u>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u>, -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u>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u>

주: 유동수 의원안(의원번호 2111862. 발의일 '21.8.2.)

◦ 주요 심사의견

- (찬성 입장) 현행 과세기준 9억원은 2008년 이후 고정된 상태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반영하여 고가주택 등의 기준액을 조정할 필요성 존재
- (반대 입장) 최근 부동산 보유세 완화¹¹⁾가 추진되는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별도 조치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상향은 정책 일관성 훼손, 조세부담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

[표 10]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 비과세기준 상향 관련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고가주택 등의 기준이 2008년 9억원으로 규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음에 따라 주택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비과세기준 상향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 확대 뿐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을 낮춰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해당
반대 의견	- 부동산 보유세 완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양도세 완화는 고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켜 주택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 - 근로소득과세 등과 비교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

◦ 결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가주택 및 조합입주권 가액을 12억원으로 상향안(의원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

□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

◦ 관련 안건

- 단기보유 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현행 대비 30%p, 미등기 양도자산 현행 대비 20%p 상향(강병원 의원안)
- 단기보유 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현행 대비 20%p 상향, 비사업용 토지 현행 대비 10%p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양경숙 의원안)

11)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표 11]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상향 개정안

현 행	강병원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보유기간 1년 미만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 -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70%	보유기간 1년 미만 - 80% - 동일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 동일
보유기간 2년 미만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60%	보유기간 2년 미만 - 70% - 동일	보유기간 2년 미만 - 60% - 동일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p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20%p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미등기 양도자산: 70%	90%	-

◦ 주요 심사의견

- (찬성 입장) 향후 증가하게 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투기목적 거래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위해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필요
- (반대 입장) 토지 등의 단기보유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모두 투기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

[표 12]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에서 기 발표한 사항으로 투기근절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개정 필요
반대 의견	- 토지 등의 단기보유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투기로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투기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에 해당

◦ 결론

-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인상이 시행(21.6.1.)된 점을 감안하여 단기보유에 대한 세율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중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 계류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관련 안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의무 완화(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양금희·구자근 의원안)
 -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상향
 -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의 계속경영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상향
 - (사후관리 의무 완화) 상속 개시 후 상속세 추징 요건 완화
- 주요 심사의견

[표 13]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구 분	심사 의견
찬성 의견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음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시 최고세율이 60%까지 적용됨에 따라 경영포기 또는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
반대 의견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요건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음 - 자산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기존 세법개정 기조에 배치

- (결론)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활성화, 투자·고용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 매출 3천억원 이하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채택되었으며, 공제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은 채택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6

의원발의안 반영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 반영된 안건은 총 22건
- 「조세특례제한법」 6건, 「소득세법」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국세기본법」·「관세법」·「관세사법」 각 2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증권거래세법」 각 1건

[표 14]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법률명	개정안
「국세기본법」 (2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윤후덕·민형배 의원안 (국세통계 작성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 추경호 의원안
「소득세법」 (4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경감되는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박형수 의원안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인상) 유동수 의원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윤창현·유경준·노웅래·조명희 의원안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김기현·정일영 의원안
「법인세법」 (1건)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추가) 박홍근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3건)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양금희·구자근 의원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장제원·이원택·추경호 의원안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 박정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1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김영진 의원안
「증권거래세법」 (1건)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상향입법 및 투자자 분류 정보 추가) 양경숙 의원안
「관세사법」(2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는 행위 금지) 김주영 의원안 (시험 방해행위 금지) 추경호 의원안
「관세법」(2건)	(간접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품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 고용진 의원안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현장조사권 확대) 류성걸 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6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이개호 의원안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우원식 의원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상현·배현진·윤후덕·추경호·서일준·권칠승 의원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 윤후덕 의원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추경호 의원안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유경준·이상현 의원안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25건의 주요사항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 「조세특례제한법」 13건, 「소득세법」 4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관세법」 각 2건, 「개별소비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각 1건

[표 15]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법률명	수정사항
「소득세법」 (4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 - 금융투자소득과세 과세자료 제출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도록 조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신설에 있어 3년의 적용기한을 부여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는 현행을 유지
「법인세법」 (2건)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변경대상이 되는 간접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을 명확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대상을 명확히 규정
「부가가치세법」 (2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개별소비세법」 (1건)	- 제조장외 장소에서 반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 사유를 구체화
「관세법」 (2건)	- 영세납세자 관세 국선대리인 신설 미반영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반품을 관세환급대상으로 확대함에 있어 소액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조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건)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13건)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 변경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확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요건 조정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미반영 -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의 추가되는 요건에 지역경제를 고려할 것을 명시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미반영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

향후 논의 과제

- 2021년 세법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토대로 국세는 12월 2일, 지방세는 12월 9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제도 상존
- 근로장려세제 제도개편 관련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지속적인 제도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소득기준금액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점감구간 확대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시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산업·국가성장동력 관련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술 또는 산업(예:수소, AI, 게임산업 등),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 이와 관련하여 국회 심의 사항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기술에 수소 분야 기술 등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논의

- 2020년 세법 개정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 및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함에 따라, 2021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함
 - (2020년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 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 (2021.11.12.)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 (2021.11.17.) 조세소위원회 안건 심사 전 해당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 보고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과세방식 전환 등 해당 논의 주제는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편과 관련된 것으로서 향후 중장기적 관점의 검토 필요
 -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정부는 부의 집중 완화, 소득세 면세자 비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의 납세자가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의 보완 성격이 있는 상속세 세율 조정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해외 상속세 단일세율 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은 상속세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에 해당하며, 해외 주요국의 과세방식 전환 사례에 대한 정리를 요구

□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환경 관련 이슈 또한 추후 논의 과제에 해당

- 올해 발의된 탄소세 도입 관련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안, 210873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안, 2111470)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계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1.11.26.) 기후변화 이슈 관련 탄소세 도입 등 세제개편안은 공청회 개최 등 종합적 논의 필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규제 및 재정·금융 수단의 활용 여부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
-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과 관련 올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었으나, 친환경 자동차 분류에 대한 환경부 등의 입장차 존재
 - (부대의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연내 최대한 조속히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발표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줄일 것’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

국세기본법

가. 총괄

- 「국세기본법」은 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 조정’, ‘국세 부과제척기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및 ‘소액채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등 납세자 부담 경감 등 무쟁점 법률안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개정
 - 그 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민형배 의원안)’,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제공대상에 국회의원 추가(추경호 의원안)’ 등은 정부안 없이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에 반영
- 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부담 경감
 -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 조정
 -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인 납세의무 적용대상으로 추가
 - 이를 통해 현행 유류분 상속시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
 - 불법소득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소득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 적용함으로써 과세권 행사를 통한 세수손실 방지
 - 소액채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 2008년 결정된 후 고정된 소액채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및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대상 확대
 - 은닉재산 신고 유인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

나. 주요 논의 사항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 조정

□ 공동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 조정

- 주요내용: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의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를 추가

[표 16] 공동상속자 납세의무 범위조정 개정내용 비교

현 행	개 정 (정부안)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개별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	
① 일반적인 경우② 외에 모두 적용	① (현행 동일)
- 민법에 따른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② 예외적인 경우	② (현행 동일)
- 상속인 중 다음 하나가 포함된 경우	- (현행 동일)
·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 (현행 동일)
· (신 설)	·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개정취지: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에도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인별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점을 개선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추계 기간의 유류분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 따른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및 이에 대한 국세부과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소송 관련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합의

(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 체납자의 은닉재산¹²⁾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 상향
 - 주요내용: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 상향
 - (현행) 20억원, (개정) 30억원
 - 개정취지: 은닉재산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1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안 및 개정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윤후덕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개 정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20억원	40억원	40억원	30억원

□ 최근 개정 연혁

[표 18]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개정연혁

구 분	2013	2014.1.	2014.12.	2017
탈세제보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은닉재산신고		20억원	20억원	20억원

주: 개정연도 기준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추계 기간의 은닉재산 신고건수 및 포상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와 동일한 40억원으로 상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논의

1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③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 재산은닉 행위의 고도화·지능화를 감안할 때 은닉재산 신고유인 강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여·야 공감대 형성, 다만 실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30억원 한도로 수정하여 개정

[표 19]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 조정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제24조제3항)	(신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부과제척기간 특례범위 확대 (제26조의2제6항)	부과제척기간 특례 기준을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경우 결정·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신설)	형사소송 확정판결로 불법소득이 확인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소액체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제84의2제1항)	20억원	30억원
국세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 제공 대상 확대		
국세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 제공대상자에 국회의원 추가(제85의6제7항)	국세통계자료 작성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장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 정부출연기관장 등	좌동 국회의원 추가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연기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제81조의7)	(신설)	1. 연기중단 사유 - 연기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조사재개 사유 -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서장은 조사개시 5일 전까지 연기사유 소멸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신설)	직무집행 거부, 금품수수 및 공여,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규정 마련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가. 총 괄

- 소득세 분야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요건인 소득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신설·강화하였으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
 -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행을 1년 유예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요건인 소득기준금액을 200만원 상향조정
 - 단독/홀별이/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각각 2,000/3,000/3,600만원에서 2,200/3,200/3,800만원으로 인상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22.12.31.까지) 연장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확대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청년 근로자의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
-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과세체계 정비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 부동산 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준금액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9억원 기준이 설정된 2008년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며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합의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
 -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과세체계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상장법인주식의 양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 그 외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신설 또는 개정
- (소외계층 지원) 2021년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율(현행 1천만원 이하/초과 : 15%/30%) 5%p 한시 상향 적용
 -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5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10만원 이하 90.9%, 10만원 초과 시 15%의 세액공제 적용
 - (출산율 제고)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각각 30%(+10%p), 20%(+5%p)로 인상

나. 주요 논의 사항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근로장려금의 지급 요건인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인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을 현행 대비 200만원 인상
 - 개정취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표 20]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가구 유형	현 행	정부안	개 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3,800만원

□ 최근 개정 연혁

- 2018년 신청자격 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지급시기 변경 등
 - 단독가구 연령 제한(30세 이상) 폐지
 - 소득요건(단독/홀벌이/맞벌이): 1,300/2,100/2,500만원 → 2,000/3,000/3,600만원
 -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단독/홀벌이/맞벌이): 85/200/250만원 → 150/260/300만원
 - 지급시기 변경: 다음연도 1회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별 2회
- 2019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홀벌이가구 범위 확대
 - 최소지급액: 점증 및 점감구간 3만원 → 점증구간 10만원, 점감구간 3만원
 - 홀벌이 가구 판정 요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2020년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
 - 홀벌이 가구 판정 요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 미적용
 -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거주자 동의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위임 세무공무원 등이 환급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가능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세수효과

- (2022년) -2,808억원 (연평균) -2,628억원 (2022~2026년) -13,139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지급구조 개편 방향(점감구간 확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정부안 대로 통과
- 우리나라의 소득기준금액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점감구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 및 지급구조 재편 등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근로장려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구조(점증-평탄-점감구간) 재편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시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

(2)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개정취지: 2008년 이후 발생한 주택 거래가격 상승 반영
- 시행일: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최근 개정 연혁

- 2002년 고가주택 기준금액: 양도 실지거래가액 6억원으로 규정
- 2008년 고가주택 기준 금액 상향: 6억원 → 9억원

[표 21]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유동수 의원안	개 정
비과세 양도소득 제외대상	- 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②, §155⑰ 9억원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부동산 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과세 기준금액(9억원)이 2008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며 12억원으로 상향에 합의

-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실거래가 하향세가 목격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기준금액 인상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다만,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완화 효과가 커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최근 보유세 완화¹³⁾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음

(3)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 1년 유예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
- 개정취지: 과세체계 정비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표 2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행	윤창현 의원안·조명희 의원안·노웅래 의원안	유경준 의원안	개정
시행시기	2022.1.1.	2023.1.1.	2024.1.1.	2023.1.1.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및 양도차익 등에 대한 가용자료 부재로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간 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과세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
- 다만, 정부는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2021년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거래소간 거래내역은 납세자의 정보공개 동의시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

13) 종부세 부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4) 기부금세액공제 한시 상황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을 2021년 기부한 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5%p 상향
 - 현행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이나, 2021년 기부분의 경우 각각 20%와 35%로 상향
- 개정취지: 나눔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 지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적용

[표 2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구분	현행	송언석 의원안	정부안	개정
1천만원 이하분	15%	30%	15% (2021년 기부분 20%)	15% (2021년 기부분 20%)
1천만원 초과분	30%		30% (2021년 기부분 35%)	30% (2021년 기부분 35%)

□ 최근 개정 연혁

[표 24] 기부금 공제 개정연혁

	2013년 이전	2013년	2015년	2018년
공제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공제율	6~38% (소득구간별 차등적용)	15% (3천만원 초과분 25%)	15% (2천만원 초과분 30%)	15% (1천만원 초과분 30%)

주: 개정연도 기준

□ 세수효과

- (2022년) -3,223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기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율 5%p 상향안을 제안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을 금액과 상관없이 30%로 단일화하는 안(송언석 의원안)을 함께 논의하였으나 세수감소 효과가 낮은 정부안 채택

- 다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활성화에 대한 인과관계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
 - 세액공제를 상향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기보다 세금으로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당초 2021년 지출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상향은 2021년 설 민생안정 대책(2021.1.20.)에서 기 발표되었음에도 개정안 제출이 늦은 것을 지적하며 부대 의견 채택
 - 부대의견: 향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 추진 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할 것

(5)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의 공제율 확대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의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 현행 “그 밖의 의료비”로 분류되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공제율을 20%로 상향
- 개정취지: 출산율을 제고하고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25]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구분		현행	김기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개정
공제율	난임시술비	20%	30%	30%	30%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20%	20%	30%	30%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20%	15%	20%
공제한도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한도없음	한도없음	한도없음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연 700만원	연 700만원	연 700만원	연 700만원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없음	연 700만원	연 700만원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신설: 난임시술비의 15%
- 2016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상향 : 난임시술비의 20%

□ 세수효과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 (2023년) -12억원 (연평균) -17억원 (2023~2026) -62억원
-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 난임시술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에 관한 자료의 미비로 추정곤란
-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 해당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수와 급여액, 의료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로 추정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수용하여 두 개의 의원안을 종합한 수정안으로 여·야 합의
- 기타 공제제도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

(6)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¹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5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별도의 세액공제율 규정)
- 10만원 이하 90.9%, 10만원 초과 시 15%의 세액공제 적용
- 개정취지: 지역경제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14)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인별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6]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이개호 의원안	개 정
세액 공제율	신설	(거주자)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거주자)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15%
		(사업자인 거주자)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사업자인 거주자)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납입한도		-	연 500만원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2023.1.1.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기부자가 지정하는 고향기부금 납부지역, 기부금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2017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다수의 의원안 발의
- 2017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도 중단
 - 당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함으로써 지역특산물 홍보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 기부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방재정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이 무산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 중단
- 2020년 이후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관련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된 가운데,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1.10.19.)
 -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이견 없이 합의
 -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공제한도와 시행일을 조정

[표 27] 소득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서민·소상공인 지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의 소형주택 특례 일몰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시상향(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	(공제율) - 1천만원 이하분: 15% -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율) 2021년 기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제율 5%p 상향 - 1천만원 이하분: 20% - 1천만원 초과분: 35%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경감되는 자진신고 기간 연장 (소득세법 제81조의9)	(자진신고 기간) - 7일 이내	(자진신고 기간) - 10일 이내
중간예납의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소득세법 제86조제4호)	중간예납의 소액부징수 기준: 30만원	중간예납의 소액부징수 기준: 50만원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제29조의6제1항)	- 감면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적용기한: 2021.12.31.	- 감면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적용기한: 2024.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조특법 제30조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2.12.31.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 등 연장 (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재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 (조특법 제99조의10제6항)	-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2020.1.1.~ 2023.12.31. - 신청기간: 2020.1.1.~ 2023.12.31. - 징수특례 내용: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간 분할납부 - 적용대상 체납액 기준일 '19.12.31.이전 폐업시:'19.7.25. '20.1.1.~12.31.폐업시:'20.7.25.	-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2020.1.1.~ 2024.12.31. - 신청기간: 2020.1.1.~ 2024.12.31. -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간 분할납부 - 적용대상 체납액 기준일: (신설) '21.1.1.~12.31. 폐업시: '21.7.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 인상(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000만원 홀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 홀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반기별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조특법 제100조의8제8항)	- 정산시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	- 정산시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2조의3 제1항, 제3항)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1.12.31. - 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1.12.31.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3.12.31. - 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3.12.31.
자산형성 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조특법 제87조제3항)	- 가입대상: 총급여액 3천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청년 - 적용기한: 2021.12.31.	- 가입대상: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청년 - 적용기한: 2023.12.3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1조의19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제91조의20)	(신설)	-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가입대상 소득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 납입한도: 연 6백만원* *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합계액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제91조의21)	(신설)	- 가입대상: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청년 - 가입기한: 2022.12.31. - 적용기한: 2024.12.31. - 납입한도: 연 6백만원
투자 활성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 (조특법 제26조의2제1항)	- 적용 대상: 2022.12.31.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 - 특례 내용: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적용 대상: 20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3년간 지급 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 - 특례 내용: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9% 분리과세
공모부동산펀드 및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연장(조특법 제87조의7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과세체계 정비		
성실신고 확인서의 미제출 가산세 부과기준에 총수입금액 추가(소득세법 제81조의2)	(가산세 산정기준) - 산출세액×(종합소득 대비 사업소득의 비중)×5%	(가산세 산정기준) - ‘산출세액×(종합소득 대비 사업소득의 비중)×5%’ 또는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 정의 정비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 주식등: 제87조의2제1호에 따 른 주식등(금융투자소득세 상 주 식등)	(정의) -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포함 (시행일) 2023.1.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특례 개편(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신설)	- 상장법인 주식양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 (조특법 제104조의4)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기본공제 5,000만원 산정 시 포함 - 시행일: 2023.1.1.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적용시기) 2022.1.1.	(적용시기) 2023.1.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사향(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제1조, 제5조, 제20조, 제22조)		
과세형평성 제고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이 되는 정비사업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범위) - 소규모재건축사업	(범위) -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4호)	(요건)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요건)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한정)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소득세법 제150조)	(신설)	(공제한도)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적용기한) 2024.12.31.
기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소득세법 제56조의3)	(신설)	(적용기한) 2024.12.31.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공제율) - 본인·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15% - 난임시술비: 20%	(공제율) - 본인·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15% - 난임시술비·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 20%
금융투자소득세의 분할납부 허용(소득세법 제87조의27)	(신설)	금융투자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인상(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제4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 시행령 규정사항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령 위임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26조의11)	(신설)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미신고·과소신고가산세액 환급 배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대리 신고 허용(소득세법 제124조)	(신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의 동의 하에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대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원천징수 시 금융투자소득세의 통합 원천징수 허용(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과 다른 계좌의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구분하여 징수	특정금전신탁과 다른 계좌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합하여 원천징수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한 (소득세법 제156조의 7)	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근로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1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근로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1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제한: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3.12.31. 이전 일 경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상의 확대(소득세법 제177조)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 현금영수증가맹점 - 과세자료를 제출할 자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자 중 과세자료를 제출할 자에 법인을 포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16조의2)	-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 비과세 한도: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대상: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 - 비과세 한도: 5천만원 - 적용기한: 2024.12.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의3)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4.12.31.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제16조의4)	-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대상: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 - 적용기한: 2024.12.31. - 단서신설: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8조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8조의2제2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전략적 제후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제46의7)	- 적용대상: 벤처기업 등 -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대상: 기술우수 중소기업 포함 - 적용기한: 2024.12.31.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46조의8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한 연장(조특법 제69조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 연장(조특법 제77조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77조의2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5조의7 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85조의9제1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주: ()안의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가. 총 괄

- 법인세 분야 개정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확대와 일자리 회복 지원을 위한 고용분야 세제지원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율 신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개정
 - 단, 논의과정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지정범위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고용분야 세제지원 확대안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개정
 - 이 밖에도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 중소기업 지원,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하여 세법개정
-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 국회 심의과정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였으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산업의 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
 - 수소 분야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 및 게임분야 관련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 고용분야 세제지원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하여 비수도권 취업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공제를 2021~202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사후관리를 보완하면서 두 제도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1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확대
 - 고용분야 관련 세액공제 확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명목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의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 정부안대로 개정

-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공제 우대범위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제액 상향 등에 대해 주로 논의
- 이외에도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 중소기업 지원,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하여 제출된 정부안과 다수의 의원 발의안을 국회에서 심의
 - 벤처투자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을 위한 주식인수시 피인수법인 지분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을 위해 생계형 창업지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정부출연금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특례를 허용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배제

나. 주요 논의 사항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공제율 신설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①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¹⁵⁾’로 지정하고, 종전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 ②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
 - 개정취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 장려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은 2021년 7월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15) 구체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21년 7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준, R&D 34개, 시설 31개 분야)

[표 28] 국가전략기술 관련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김경만 의원안	홍정민 의원안	정부안	개정																																																																					
R&D	(기본) 중소 50% 코스닥중견 45% 그 외 40% (추가)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 기술 R&D 비율 × 3 (한도 10%, 코스닥중견 15%)	없음	(기본) 중소 40% 그 외 30% (추가)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 기술 R&D 비율 × 3 (한도 10%)	(정부안)																																																																					
시설 투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 colspan="3">당기분</th><th>증가분</th></tr> <tr> <td></td><td>대</td><td>중견</td><td>중소</td><td></td></tr> <tr> <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3">3</td></tr> <tr> <td>신성장</td><td>3</td><td>5</td><td>12</td></tr> <tr> <td>국가 전략기술</td><td>8</td><td>10</td><td>20</td></tr>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8	10	20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 colspan="3">당기분</th><th>증가분</th></tr> <tr> <td></td><td>대</td><td>중견</td><td>중소</td><td></td></tr> <tr> <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3">3</td></tr> <tr> <td>신성장</td><td>3</td><td>5</td><td>12</td></tr> <tr> <td>국가핵심 전략기술</td><td>6</td><td>8</td><td>16</td></tr>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핵심 전략기술	6	8	16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 colspan="3">당기분</th><th>증가분</th></tr> <tr> <td></td><td>대</td><td>중견</td><td>중소</td><td></td></tr> <tr> <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3">3</td></tr> <tr> <td>신성장</td><td>3</td><td>5</td><td>12</td></tr> <tr> <td>국가 전략기술</td><td>6</td><td>8</td><td>16</td></tr>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정부안)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8	10	20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핵심 전략기술	6	8	16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	3	5	12																																																																						
국가 전략기술	6	8	16																																																																						
적용 기한	항구 적용	2024.12.31.	2024.12.31.	(정부안)																																																																					

[표 29]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행	구자근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공제율	(기본) 중소 30% 코스닥중견 25% 그 외 20% (추가)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 10%, 코스닥중견 15%)	(기본) 중소 50% 코스닥중견 45% 그 외 40% (추가)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 30%, 코스닥중견 35%)	(기본) 중소 40% 코스닥중견 35% 그 외 30% (추가)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 10%, 코스닥중견 15%)
적용기한	2021.12.31.	2023.12.31.	2024.12.31.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개정
공제율	(기본) 중소 30%, 중견 25% 그 외 20% (추가)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 10%, 중견 15%)	(현행)	(현행)
적용기한	2024.12.31.	2024.12.31.	2024.12.31.

□ 최근 개정 연혁

- (R&D) 2010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신설로 2단계 지원구조 마련
 - 일반 R&D: 2014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지속적으로 축소
('14) 3~4% → ('18~현행) 0~3%
 - 신성장·원천: '17년부터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에 대한 추가공제율 적용
- (시설투자)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 개별 공제제도를 통합·단순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운용
 - 일반사업용 자산(토지·건물·차량 등은 제외) 전반으로 공제대상 자산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의 경우 기본공제율 2%p 우대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구간 신설
 - (2022년) -5,731억원 (연평균) -1조 938억원 (2022~2026년) -4조 3,751억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 (2022년) 없음* (연평균) -6,836억원 (2022~2026년) -2조 509억원
 - *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감안시 2023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중점 논의 사항

- 차세대 성장 분야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국회의 심사가 진행됨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
 -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선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협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시
 - 수소·AI 등 타 분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향후 국가경제 및 안보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
 -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과 별개로 논의할 문제라는 반론 제시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으로 규정하되, 정부가 주요 분야의 기술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 부대의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공통 사용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

- 부대의견: 정부는 수소 분야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 및 게임과 관련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명확화 및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2)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적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비수도권의 취업 취약계층인 우대공제 대상에 대한 공제금액 한시 상향
 - 비수도권의 우대공제 대상(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1인당 공제금액을 2021~202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개정취지: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표 30]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행	김경만 의원안	이용·추경호 의원안
고용증가 1인당 공제금액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시) 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770만원 (우대공제대상 증가시)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1,100만원 비수도권 1,200만원	(일반근로자 증가시) 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1,000만원 비수도권 1,100만원 (우대공제대상 증가시)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1,500만원 비수도권 1,600만원	(현행)
우대공제 대상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현행)	(현행)
적용기한	2021.12.31.	2024.12.31.	2024.12.31.

	지성호 의원안	정부안	개정
고용증가 1인당 공제금액	(현행)	(일반근로자 증가시) 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770만원 (우대공제대상 증가시) 대기업: 수도권 400만원 비수도권 500만원 중견기업: 수도권 800만원 비수도권 90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1,100만원 비수도권 1,300만원 - 단, 비수도권 우대공제 대상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은 한시적으로 도입 (2021~2022년)	(정부안)
우대공제 대상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탈북이탈주민	(현행)	(정부안)
적용기한	2024.12.31.	2024.12.31.	(정부안)

□ 최근 개정 연혁

- 2017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기업규모별로 400~1,100만원의 세액공제
 - 지원기간: 중소·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
- 2019년 청년 등에 대하여 우대공제 적용, 감면기간 확대
 - 청년·장애인 등의 경우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기존 대비 100만원 추가공제
 - 지원기간: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으로 확대
- 2020년 우대공제 적용대상 확대
 - 우대공제 적용대상에 60세 이상 상시근로자 추가

□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22년) -77억원* (연평균) -1조 674억원 (2022~2027년) -5조 3,369억원
 - * 소득세 세수효과가 포함된 금액
 - 고용이 증가한 이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업규모별로 최대 3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2024년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2027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 중점 논의 사항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금액을 상향하거나 우대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의원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정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금액 한시적 상향안과 병합하여 국회의 심사가 진행됨
- 최근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성에는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우대공제 적용대상의 범위와 세액공제액 확대 등에 대하여 주로 논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의 민간소비와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하였으므로, 고용증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동의
 - 단, 현행 대비 고용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비수도권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21~202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의원 발의안은 우대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확대 및 기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
-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1인당 우대공제 금액에 대한 비수도권 중심의 한시적 확대안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 우려 등 제기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위기 이후 '낙인효과'에 따른 실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역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생계형 창업의 연수입금액 기준 완화
 - 현행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개정취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기준 완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표 31]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김수흥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현행)	(현행)																		
감면율	- 기본감면 <table><tr><th>구분</th><th>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內</th><th>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外</th></tr><tr><td>창업 중소기업</td><td>-</td><td>5년 50%*</td></tr><tr><td>청년· 생계형</td><td>5년 50%</td><td>5년 100%</td></tr><tr><td>벤처기업</td><td colspan="2">5년 50%*</td></tr><tr><td>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td><td colspan="2">5년 50%*</td></tr><tr><td>창업보육 센터사업자</td><td colspan="2">5년 50%</td></tr></table> *신성장서비스업: 3년 75%, 2년 50%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50%	구분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內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 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년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년 50%		(현행)	(현행)
구분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內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 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년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년 50%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이하	(현행)	(현행)																		
적용기한	2021.12.31.	2023.12.31.	2024.12.31.																		
	이용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현행)	(현행)																		
감면율	- 기본감면 <table><tr><th>구분</th><th>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內</th><th>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外</th></tr><tr><td>창업 중소기업</td><td>-</td><td>5년 50%</td></tr><tr><td>청년</td><td colspan="2">5년 100%</td></tr><tr><td>창업보육 센터사업자</td><td colspan="2">5년 50%</td></tr></table>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50%	구분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內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	5년 10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년 50%		(현행)	(현행)						
구분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內	수도권과밀 억제구역 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청년	5년 10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년 50%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매출액 기준	(현행)	연 8,000만원 이하	연 8,000만원 이하																		
적용기한	2024.12.31.	2024.12.31.	2024.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확대 및 신설
 -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을 5년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의 세액감면 적용
 -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연수입 4,800만원 이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의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기업의 경우 100% 감면 조항 신설

□ 세수효과

- (2022년) 없음* (연평균) -4,559억원 (2022~2026년) -18,235억원
 - * 소득세 세수효과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기간 감안시 2023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일자리 창출 등 창업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나, 창업 초기 폐업률이 높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였으나,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 다만, 이는 지역균형발전 저해 또는 일반창업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 제시
 - 다만, 세액감면의 특성상 소득이 큰 기업의 혜택이 커지고,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하였어도 혜택 기간 내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도 제기
- 소규모 창업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최근 확대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와의 일치를 통해 납세 편의 제공 및 제도 도입 당시 취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에 합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일몰연장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중단 및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과 동시에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개정취지: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증대 촉진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표 3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김수흥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사후관리	-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전여간 공제 배제 - (신설)	(현행)	(현행)
시행일		2022.1.1.	공포한 날
적용기한	2021.12.31.	2024.12.31.	2024.12.31.

	김상훈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사후관리	(현행)	(현행)	(현행)	- (현행) -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시행일	공포한 날	2022.1.1.	2022.1.1.	2022.1.1.
적용기한	2023.12.31.	2024.12.31.	2024.12.31.	2024.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 100% 적용 상시근로자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되었고,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75% 공제율 적용
- 2018년부터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 그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

□ 세수효과

- (2022년) 없음* (연평균) -2,934억원 (2022~2026년) -11,736억원

* 소득세 세수효과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기간 감안시 2023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주요 논의 사항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
 -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통폐합을 통한 고용지원세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또한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 동 제도가 상시화될 경우 사회보험 조기가입 촉진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한편, 동 제도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가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증대 효과의 지속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도록 한 정부안에 합의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생생결제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및 공제율 세분화·상향
 - 현금성결제 비율 삭제 및 어금결제 요건 완화
 - 지급기한 16~30일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현행대비 상향
- 개정취지: 중소기업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생결제제도의 이용 확산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일몰기한: 2022년 12월 31일

[표 3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행	이광재 의원안	정부안	개정
요건	①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현행)	(현금성결제 비율 삭제) 어음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정부안)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현행)	상생결제금액 - 현금성결제 감소분	(정부안)
공제율	지급기한	지급기한	지급기한	(정부안)
	공 제 율	공 제 율	공 제 율	
	15일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0.2%	0.5%	0.5%	
	16~60일	16~30일	16~30일	
	0.1%	0.3%	0.3%	
		30~60일	30~60일	
		0.1%	0.15%	
최저한세 적용여부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적용 배제	(현행)	(정부안)
적용기한	2022.12.31.	2023.12.31.	2022.12.31.	(정부안)

□ 최근 개정 연혁

- 2018년부터 공제대상을 종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
- 2016년 도입 이후 3차례 일몰연장

□ 세수효과

- (2022년) 없음* (연평균) -38억원 (2022~2026년) -38억원
- * 소득세 세수효과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기간 감안시 2023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중점 논의 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생결제 공제 대상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상생결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이견없이 합의
 - 지급기일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율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이광재 의원안 및 정부안이 제시한 3단계 수준으로 채택
- 동 제도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적용대상·규모 등을 검토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표 34] 법인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공제율 신설 (조특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R&D 세액공제율) (단위: %) <table><tr><td></td><td>중소</td><td>중견</td><td>대</td></tr><tr><td>일반</td><td>25</td><td>8</td><td>2</td></tr><tr><td>신성장·원천</td><td>30~40</td><td colspan="2">20~30</td></tr></table>		중소	중견	대	일반	25	8	2	신성장·원천	30~40	20~30		(R&D 세액공제율) (단위: %) <table><tr><td></td><td>중소</td><td>중견</td><td>대</td></tr><tr><td>일반</td><td>25</td><td>8</td><td>2</td></tr><tr><td>신성장·원천</td><td>30~40</td><td colspan="2">20~30</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40~50</td><td colspan="2">30~40</td></tr></table>		중소	중견	대	일반	25	8	2	신성장·원천	30~40	20~3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중소	중견	대																																						
	일반	25	8	2																																						
	신성장·원천	30~40	20~30																																							
		중소	중견	대																																						
일반	25	8	2																																							
신성장·원천	30~40	20~3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위: %) <table><tr><td></td><td colspan="3">당기분</td><td rowspan="2">증가분</td></tr><tr><td></td><td>중소</td><td>중견</td><td>대</td></tr><tr><td>일반</td><td>10</td><td>3</td><td>1</td><td rowspan="2">3</td></tr><tr><td>신성장·원천</td><td>12</td><td>5</td><td>3</td></tr></table>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대	일반	10	3	1	3	신성장·원천	12	5	3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위: %) <table><tr><td></td><td colspan="3">당기분</td><td rowspan="2">증가분</td></tr><tr><td></td><td>중소</td><td>중견</td><td>대</td></tr><tr><td>일반</td><td>10</td><td>3</td><td>1</td><td rowspan="3">3</td></tr><tr><td>신성장·원천</td><td>12</td><td>5</td><td>3</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16</td><td>8</td><td>6</td></tr></table>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대	일반	10	3	1	3	신성장·원천	12	5	3	국가전략기술	16	8	6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대																																							
일반	10	3	1	3																																						
신성장·원천	12	5	3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대																																							
일반	10	3	1	3																																						
신성장·원천	12	5	3																																							
국가전략기술	16	8	6																																							
	(적용기한) - (신설)	(적용기한) - 2024.12.31.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조제1항)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4.12.31.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조의2)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조)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 - 중소기업 (적용기한) - 2021.12.31.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적용기한) - 2023.12.3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외제작비 포함 (조특법 제25조의6)	(공제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	(공제대상) -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																																								
고용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제29조의3)	(경력단절인정 기간) - 퇴직 이후 3~15년	(경력단절인정 기간) - 퇴직 이후 2~15년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9조의7)	(1인당 세액공제) (단위: 만원) <table><tr><th>구 분</th><th>중소</th><th>중견</th><th>대</th></tr><tr><td>청년등</td><td>1,100 (1,200)</td><td>800</td><td>400</td></tr><tr><td>기타</td><td>700 (770)</td><td>450</td><td>-</td></tr></table> 주: ()안은 수도권외 지역 (적용기한) - 2021.12.31.	구 분	중소	중견	대	청년등	1,100 (1,200)	800	400	기타	700 (770)	450	-	(1인당 세액공제) (단위: 만원) <table><tr><th>구 분</th><th>중소</th><th>중견</th><th>대</th></tr><tr><td>청년등</td><td>1,100 (1,300)*</td><td>800 (900)*</td><td>400 (500)*</td></tr><tr><td>기타</td><td>700 (770)</td><td>450</td><td>-</td></tr></table> 주: *은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적용기한) - 2024.12.31.	구 분	중소	중견	대	청년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타	700 (770)	450	-
구 분	중소	중견	대																							
청년등	1,100 (1,200)	800	400																							
기타	700 (770)	450	-																							
구 분	중소	중견	대																							
청년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타	700 (770)	450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0조의2)	(적용요건) - '20.6.30.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요건) - '20.6.30.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특수관계인 제외 단서 신설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적용기한) - 2022.12.31.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0조의3)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0조의4)	(사후관리) -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 (신설) (적용기한) - 2021.12.31.	(사후관리) - 현행과 같음 -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고용분야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규정 (적용기한) - 2024.12.31.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제44조)	(단서 신설)	(적용요건) - 스팩(SPAC)은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지속요건 배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적용요건) - 취득일 현재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자본이 기준자본비율을 초과할 것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요건)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자본이 기준자본비율을 초과할 것 (적용기한) - 2024.12.3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3조)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34조·제39조· 제40조·제44조)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 연장 (조특법 제38조의2)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 2022.1.1. ~ 2024.12.31.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 2024.1.1. ~ 2026.12.3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52조)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6)	(특례대상) - 금융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사후관리)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 (신설) (적용기한) - 2021.12.31.	(특례대상) - 금융채무 상환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사후관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산 취득 후 4년 이내 처분한 경우 (적용기한) - 2023.12.31.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7~31 및 제117조)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조)	(적용요건) -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이하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요건) -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 이하 (적용기한) - 2024.12.3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제7조의4)	(감면요건) - 현금성결제 비율 감소하지 않을 것 - 어음결제 금액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 상생결제금액 (공제율) - 지급기한에 따라 0.1~0.2%	(감면요건) - <삭제> - 어음결제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대상) - 상생결제금액 - 현금성 결제 감소분 (공제율) - 지급기한에 따라 0.15~0.5%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추가 (조특법 제8조의3)	(적용대상)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등 - (신설)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출연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9조제1항)	(세액공제율) - 10% (적용기한) - 2021.12.31.	(세액공제율) - 15% (적용기한) - 2024.12.31.
기업활력 제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조특법 제100조의18)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 10년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 15년
차기환류적립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제100조의32)	(이월공제기간) - 차기환류적립금 발생 다음 사업연도	(이월공제기간) - 차기환류적립금 발생 다음 2개 사업연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121조의25 제9항 신설)	(신설)	(특례요건) - 수협중앙회가 20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초과 (특례내용) - 초과분은 2023~2028년 동안 균등상환한 것으로 의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과세형평 제고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신설)	(공제대상)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57조의2·제73조제1항)	(세액공제 방식) - 펀드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 전환금 후, 배분 시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	(세액공제 방식) -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 - 그 외 소득: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전환 기업 등 범위 확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적용대상)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사업양도 등으로 전환한 법인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	(신설)	(의무사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의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상향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	(가산세액) - 산출세액의 5%	(가산세액) - ①, ② 중 큰 금액 ① 산출세액의 5% ② 수입금액의 0.02%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 (조특법 제104조의7)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 현행과 같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대상 추가(조특법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대상)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 등 - (신설)	(중복지원 배제대상) - 현행과 같음 -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중복지원 배제대상 및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조특법 제127조제4항·5항 및 제144조)	(중복지원 배제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등 - <추가>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추가>	(중복지원 배제대상) - 현행과 같음 -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 현행과 같음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구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및 관리규정 신설 등 (조특법 제12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22)	(사후관리) - (신설) (적용기한) - 2021.12.31.	(사후관리) - 감면적용 후 폐업·이전 시 감 면세액 납부 (적용기한) - 2023.12.3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62조)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조특법 제63조의2)	(적용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3년 이상 운영 -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 전환 포함) - (신설)	(적용요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요건
기타		
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적용대상) - 국립대학,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평생교육시설, 한국과학기술원 등 - <추가>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 (조특법 제104조의11)	(손금산입 대상) -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 (적용기한) - 2021.12.31.	(손금산입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 (적용기한) - 2024.12.31.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12)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04조의26)	(적용요건) -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설립인가 등 취소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요건) - 정부구역 지정 해제 등에 따른 설립인가 등 취소 (적용기한) - 2024.12.31.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104조의22제2항 신설)	(신설)	(공제대상) -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 (기간) -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세액공제 (공제율) - 운영비의 10%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22조의4제1항)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주: ()의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과세 분야 등)

가. 총 괄

- 소비과세 부문 개정은 영세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감면제도 연장,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 및 지방분권 지원에 중점
 - 사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및 영세율·면세, 개별소비세 감면·환급 등의 일몰을 연장하고, 도입 취지를 달성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종료 등 제도 정비 병행
 -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 소비세 부문 주요 공제·감면·환급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정비
 -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도시가스 건설용역 등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농·수협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면제는 조합원의 실질적 부담 최소화의 취지로 발의된 의원안을 반영하여 적용기한을 추가로 2년 연장
 - 그 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생맥주 주세율 경감 특례 2년 연장
 - 제주도·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도의 당초 목표 달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료
-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 현행 21%, 2022년 23.7%(이하 현행대비, +2.7%p), 2023년 이후 25.3%(+4.3%p)
- 기후위기대응기금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년 연장
- 이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 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부과 제외 기준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재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3억원 이상→2억원 이상)에 맞추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

나. 주요 논의 사항

(1)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이하 현행대비, +2.7%p), 2023년 이후 25.3%(+4.3%p)로 인상
- 개정취지: 중앙정부 기능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 등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35]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김원이 의원안	김출민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개 정
21%	25%	30%	31%	2022년 23.7% 2023년~ 25.3%	2022년 23.7% 2023년~ 25.3%

□ 최근 개정 연혁

- 지방소비세가 신설된 2010년 이후 이양비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36]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변화

개정일	2010. 1. 1.	2013. 12. 24.	2018. 12. 31.	2019. 12. 31.
이양비율	5%	11%	15%	21%

□ 세수효과

- (2022년) -2.7조원 (연평균) -4.2조원 (2022~2026년) -21.1조원
 - 단 해당 규모만큼의 세입 귀속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로 볼 때 세입 증감은 없음

□ 주요 논의 사항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21.7.28)’에 따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단계적으로 4.3%p 인상하는 내용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은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된 바 있음
- 이와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안, 2112233)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 가결(‘21.11.10.)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에 대한 우대 공제율(1%→1.3%) 및 우대 공제한도(500만원→1천만원)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개정취지: 자영업자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37]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연장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정부안	개 정
- 우대 공제율: 1%→1.3%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1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우대 공제율: 1.3% 우대 공제한도: 1천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우대 공제율: 1.3% 우대 공제한도: 1천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08.12.26.) 우대 공제율 1%→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2.6%)
및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700만원 도입 및 2년 적용
- (2010.12.27.)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2년 연장
- (2013.1.1.) 우대 공제율 2년 연장 및 우대 공제한도 적용 종료
- (2014.12.23.) 우대 공제율 2년 연장
- (2016.12.20.) 우대 공제율 2년 연장
- (2018.12.31.) 우대 공제율 3년 연장,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1천만원 3년 적용
- (2020.12.22.)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차등 공제율 폐지

□ 세수효과

- (2022년) -4,375억원 (연평균) -4,413억원 (2022~2023년) -8,825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한시적 공제 확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 동 제도의 대상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다만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의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동 제도의 당초 목표인 세원양성화 달성 여부 및 동 제도의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등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개정취지: 농협 및 수협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38]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및 개정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정점식 의원안	김주영·김수홍· 유경준 의원안	김민철 의원안	홍문표·이달곤 의원안	정부안	개 정
농협	일몰기한: 2021.12.31.	2023.12.31.	2024.12.31.	2025.12.31.	2026.12.31.	현행 유지 2021.12.31.	2023.12.31.
구 분	현 행	양향자·유경준 의원안			이달곤 의원안	정부안	개 정
수협	일몰기한: 2021.12.31.	2024.12.31.			2026.12.31.	현행 유지 2021.12.31.	2023.12.31.

□ 최근 개정 연혁

- (2017.12.19.) 농협의 전산용역 면제 2년 연장 및 수협의 전산용역 면제 3년 연장
- (2019.12.31.) 농협의 전산용역 면제 2년 연장
- (2020.12.29.) 수협의 전산용역 면제 1년 연장

□ 세수효과

- (2022년) -54억원 (연평균) -53억원 (2022~2023년) -105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동 제도는 농협 및 수협의 분할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 및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저해 등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일몰을 종료하는 개정안을 발의
- 심사 과정에서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후 부담 가중, 조합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원안을 반영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
- 참고로, 수협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경우 정부안 및 의원안을 반영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

(4)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개정취지: 교통시설 확충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 기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39]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4.12.31.

□ 최근 개정 연혁

- 1994년 도입 후 현재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은 7차례 연장

[표 40]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연혁

구 분	유효기간	비 고
교통세법 제정(1994. 1. 1. 시행)	2003. 12. 31.	종가세에서 1996년 종량세로 전환
1차 연장(2004. 1. 1. 시행)	2006. 12. 31.	
2차 연장(2007. 1. 1. 시행)	2009. 12. 31.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 2009년 1월 폐지법률 통과
3차 연장(2010. 1. 1. 시행)	2012. 12. 31.	
4차 연장(2013. 1. 1.)	2015. 12. 31.	
5차 연장(2016. 1. 1. 시행)	2018. 12. 31.	
6차 연장(2019. 1. 1. 시행)	2021. 12. 31.	
7차 연장(2022. 1. 1. 시행)	2024. 12. 31.	

□ 세수효과

- 추가적인 세수 변화는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종료 시 휘발유·경유에 대한 과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¹⁶⁾됨

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부칙 제4667호 제9조

□ 주요 논의 사항

- 심사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의 지속적인 연장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5)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원재료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되었더라도 개별 소비세액 공제
- 개정취지: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¹⁷⁾로 인해 원재료가 개별소비세 공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필요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4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의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한 경우에만 원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공제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액 공제 허용

□ 세수효과

- (2022년) -31억원 (연평균) -31억원 (2022~2026년) -157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원재료 공제요건 적용에 대한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과세물품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예시하는 등 위임사항의 구체화 필요성 제시

17)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허가 받은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가능)하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6)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개정취지: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한 위기지역 경기 개선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표 42]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적용기한) 2021.12.31.	종 료

☐ 최근 개정 연혁

- 2019년 도입 후 적용기한 연장 없이 종료

☐ 주요 논의 사항

- 최근 골프장 입장객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에 합의
-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입장료 인하 및 위기지역 경기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

[표 43] 소비과세 분야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과세체계 조정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부가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액의 21%	(‘22년) 23.7% (‘23년~) 25.3%
영세사업자 지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부가세법 제42조)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 - 공제율 인상: 8/108→9/109 - 적용기한: 2021.12.31.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 - 공제율 인상: 좌 동 - 적용기한: 2023.12.31.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장 (부가세법 제46조)	- 우대 공제율: 1%→1.3%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1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우대 공제율 및 우대 공제한도: 좌 동 - 적용기한: 2023.12.3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세액공제 신설 (부가세법 제47조)	(신설)	- 공제금액: 건당 200원 한도: 연간 100만원(시행령) - 적용기한: 2022.7.1. ~2024.12.3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부과 대상 조정 (부가세법 제48조)	제외대상: - 징수할 세액 30만원 미만	제외대상 확대: - 징수할 세액 50만원 미만 - 재난·도산 등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 등이 있는 경우
생맥주 세율경감 특례기한 연장 (주세법 제8조)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업종별 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연장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연장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농어업 경영 등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3호)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9호)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주 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 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특법 제106조제2항제2호)	(신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 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수입물품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 경감 연장 (조특법 제106조의7)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조특법 제108조)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조특법 제109조)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2.12.31.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및 환급 한도액 조정 (조특법 제111조의2)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연장 (조특법 제111조의3)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제121조의23제10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주요 내용	현행	개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121조의25제7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상호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특법 121조의25제8항)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3.12.31.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관리제도 보완 (부가세법 제53조의2)	(신설)	- 간편사업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5년 간 거래명세 보관·제출 의무 -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 시 등록 말소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제2조)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2024.12.31.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조특법 제106조의10)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삭제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조특법 제112조, 제121조의15)	(적용기한) 2021.12.31.	(적용기한) 종료
조세제도 합리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신탁재산의 공급 간주(부가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 간주 - (신설)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시 기존 위탁자가 신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선발금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부가세법 제17조)	공급시기 -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및 대가수령이 확인될 경우	공급시기 요건 완화 -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가 도래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부가세법 제29조제4항)	과세 대상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 추가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

주요 내용	현행	개정
토지·건물 일괄공급 기준 조정 (부가세법 제29조제9항)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 대상 -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 대상 조정 -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세법 제34조의2)	발급 사유 - 부도·폐업 시	발급 사유 추가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부가세법 제60조)	(신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 신고: 0.5%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조정 (부가세법 제75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개소세법 제20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한 경우에만 원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공제 허용	다른 법령에 따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액 공제 허용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의무 관련 상향 입법 (주세법 제17조제2항)	(신설)	미납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주류면허법 제8조, 제17조)	(신설)	주류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의 수리 의무와 함께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인 범위와 업무의 위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주류면허법 제18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등)	(신설)	주류의 상표·사용변경 시 신고 의무, 물취한 주류의 매각·폐기 근거, 주류제조자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수수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

주: 1.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소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주류면허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

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가. 총 괄

- 상속세 및 증여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고용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향상 등의 방향으로 개정
 - 가업상속공제는 대상기업의 확대, 공제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에 대해 다수의 의원안을 논의하였으나, 대상기업을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만 합의
 - 영농상속공제는 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 한편,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상속세 물납 대상 확대하려는 의원안 대로 개정
 - 서화, 골동품 중 국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미술품에 대해 물납 허용
-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8월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사항 없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 증권거래세는 금융시장 안정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

나. 주요 논의 사항

(1)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범위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개정취지: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투자·고용유인 제고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표 44]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및 개정내용 비교

	현 행	홍석준·권성동·양금희 의원안	이영·양금희 의원안
대상 기업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만원 미만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만원 미만 중견기업 5년 이상 계속 경영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공제 한도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5~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10~20년: 500억원 20~30년: 700억원 30년 이상: 1천억원
	김용판 의원안	구자근 의원안	개 정
대상 기업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5년 이상 계속 경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제한 없음) 10년 이상 계속 경영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4천만원 미만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공제 한도	(현행과 같음)	10~20년: 500억원 20~30년: 1,000억원	(현행과 같음)

□ 최근 개정 연혁

- 2010년까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 2011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추가한 후, 2013년 2천억 이하로 상향, 2014년 다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한 후 현재까지 유지

[표 45]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요건 연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피상속인의 계속경영기간	5년	15년	10년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추계 기간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경제활성화, 투자·고용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인의 세부담 완화 필요
 - 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공제 적용기업 증가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가능
- 조세소위 논의 결과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 증가를 위해 중견기업 중 매출액 요건을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
- 그러나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우회적인 상속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유지하고 추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하기로 함

(2)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개정취지: 영농후계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교체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표 46]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안 및 개정내용 비교

구분	현 행	장제원·이원택 의원안
공제 한도	15억원	30억원(장제원 의원안) 50억원(이원택 의원안)
상속 재산 범위	① 「소득세법」 적용 영농: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창고·축사, 염전 ② 「법인세법」 적용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현행과 같음)
구분	추경호 의원안	개 정
공제 한도	50억원	20억원
상속 재산 범위	① 「소득세법」 적용 영농: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창고·축사, 염전, 가축 ② 「법인세법」 적용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현행과 같음)

□ 최근 개정 연혁

- 2016년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표 47] 영농상속공제 한도 연혁

구분	1995년	1997년	2012년	2016년~
공제한도	1억원	2억원	5억원	15억원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추계 기간의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영농후계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교체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원안에 대해 논의
-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최대 500억원)와 비교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15억원)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
- 이와 함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유형자산 성격인 가축을 공제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원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나, 가축의 종류별 추적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부대의견을 채택

- 부대의견: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가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3) 상속세 물납 대상 확대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 허용
- 개정취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분부터

□ 세수효과

- 세수효과 없음
 - 물납된 문화재·미술품 등 가치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세수변화 없음

□ 주요 논의 사항

- 기업총수의 사망으로 대규모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 진행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세계적 미술품 등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필요성 대두
- 그러나 물납이 인정되는 주식, 부동산과는 달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됨
 - 물납 미술품의 현금화 과정에서의 국고손실 우려,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미술품의 전면적인 물납제도 도입은 부적절할 수 있음
-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을 공공 자산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하는 의원안대로 통과
 - 부대의견: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된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문화재·미술품 물납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¹⁸⁾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 상향함에 따라 과세표준 하향
 - 과세표준: (개정 이전) [주택분 합산공시가격 -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개정 이후) [주택분 합산공시가격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 2018년 80%에서 매년 5%p씩 인상하여 2022년 이후 100% 적용
- 개정취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및 기본공제액 실효성 제고
- 시행일: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

[표 4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개정안 및 개정내용 비교

	개정 이전	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 ·윤희숙·추경호 의원안		권영세 의원안
기본 공제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김병욱 의원안	이현승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개정
기본 공제액	일반: 7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일반: 12억원 1세대 1주택: 15억원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해당금액 *억원 단위 반올림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 세수효과

- (2021년) -659억원* (연평균) -836억원 (2021~2025년) -4,180억원
- * 개정내용은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

□ 주요 논의 사항

- 2018, 2020년 두 차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분 세율 인상 등이 시행되면서,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

18) 2021년 정기국회 이전에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2112216, 발의일자: '21.8.25. 의결일자: '21.8.31.)

-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일반 주택분 납세자의 기본공제액도 상향하자는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의 기본공제액도 2008년 이후 6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던 만큼 공제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그러나 일반납세자의 기본공제액 상향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 강화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기존 정부 방침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한정 기본공제액 상향 결정

[표 49] 재산과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가업승계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	(적용기업 범위) -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적용기업 범위) - 중소기업, 매출액 4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	(공제한도) - 15억원	(공제한도) - 20억원
조세제도 합리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증법 제16조제2항)	(공제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공제요건) - 6억원	(공제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공제요건) - 현행과 동일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상증법 제41조의2)	(증여일) - 법인이 배당을 한 날 (증여일) - 다음연도 5.1~5.31일	(증여일) -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증여일) -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상증법 제78조)	(가산세액)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가산세액) -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납세의무자 납세 편의 제고		
연부연납 확대 (상증법 제71조)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 - 5년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 - 10년
문화재 등 대한 물납 (상증법 제73조의2)	(신설)	(적용요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의무 확대 (상증법 제82조제7항)	(신설)	(주식등 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17조제2항제2호)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종부세법 제8조제1항)	(주택분 기본공제액) -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9억원	(주택분 기본공제액) - 현행과 같음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주: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의미

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

가. 총괄

- (관세 분야) 항공기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연장하는 고용진 의원안이 논의되었는데, 민간항공기 협정 물품에 한정하여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안이 채택되어 대안에 반영
 - 이 외에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관세행정 합리화를 위한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
-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반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
 -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에서 납부한 세부담 판정비율을 15%에서 17.5%로 상향하는 정부안으로 개정
 - 해외의 과세기반 파악을 위한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으로 개정

나. 주요 논의 사항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축소 유예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전액 면제 종료시점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2028년말 관세 감면 종료
 - 개정취지: 항공정비(MRO)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세수효과
 - (2022년) -140억원 (연평균) -383억원 (2022~2028년) -2,681억원
- 중점 논의사항
 -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6년 폐지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를 유예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관세법」에 특례를 두는 것 보다 FTA활용도를 높이거나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 그러나 협정에 이미 가입한 미국·EU등 해외주요국이 무관세로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수입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해 3년간 관세 면제 축소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원회 대안에 반영

(2)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제도**의 세부담 판정기준을 상향하고,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 규정 신설
 - * 특정외국법인이란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저세율국 소재의 해외투자법인으로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과세하는 법인을 의미함
 - ** 특정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국내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국내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세부담 판정 비율 상향: 15% → 17.5%(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 특정외국법인 대상에 내국인이 수익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법인과세 특정 외국신탁 추가
- 개정취지: 역외 조세회피 방지

□ 세수효과

- (2022년) 20억원 (연평균) 180억원 (2022~2026년) 900억원

□ 중점 논의사항

- 우리나라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세부담률 판정기준은 1995년 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 세부담률 판정기준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상향함으로써 역외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세부담률 판정기준 상향시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을 수취하는 일부 해외투자법인이 국내 모회사로 배당할 유인이 증가하며,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금액 증가로 세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큰 점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합의

[표 50] 기타 국세 개정 내용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관세법」		
부당행위에 대한 관세의 보정 제한(제38조의2)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 보정 신청시 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과세표준 등 은폐 혹은 가장)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항공기부분품 관세 감면 기한 연장(제89조제6항)	(적용기한) - 2021년까지 면제, 2022년부터 단계적 축소	(적용기한) - 2024년까지 면제, 2025년부터 단계적 축소
관세 환급대상 확대 (제106조의2)	(적용대상)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재수출하는 경우 및 세관장 확인에 따라 재수출하는 경우 - (신설)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환불한 경우에 자진신고시 - (신설)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 자진신고시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제143조)	(세관장 하역·환적 허가 대상) -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세관장 하역·환적 허가 대상) - 추가: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제227조제3항)	(의무 이행 요구) -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의무 이행 요구 - (신설)	(의무 이행 요구) - 현행과 같음 -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 부여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제232조의3 삭제)	(원산지확인위원회)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협의를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둠	(삭제)

주요 내용	현행	개정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6조의2 신설)	(신설)	(사전전자정보 제출) -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하려는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세율표 개정 (관세법 별표)	(세목 개수) - 6,896개 세목	(세목 개수) - 6,979개 세목 (WCO 협약 개정에 따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활용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제9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의무 제출	(원산지증명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 증명서 제출 면제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제14조)	(오류 통보 주체) -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자,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오류 통보 주체) - 추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7조)	(특정외국법인 범위) - 내국인과 특수관계(지분율50%)가 있는 외국법인 (세부담률 기준) - 15%	(특정외국법인 범위) - 추가: 내국인이 수익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법인과세 특정외국신탁 (세부담률 기준) - 17.5%(법인세 최고세율의 70%)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제도 정비 등 (제58조)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해외부동산 취득시: 취득내역 -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 처분시: 처분내역 - (신설)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유시: 보유내역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제63조)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 투자운용(임대)시 미제출: 운용소득의 10% -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 (신설)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주: 'FTA관세법'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국조법'은 「국제조세조정법」을 의미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

- 정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의원안으로 발의되어 대안으로 반영된 안건은 총 22건
 - * 의원안과 정부안이 동일한 사항을 제안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는 III-2 참조
 - 「소득세법」 4건, 「조세특례제한법」 6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등

가.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윤후덕·민형배 의원안)
 -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신고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수정하여 반영
- 국세통계 작성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추경호 의원안)
 - 국세통계 작성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반영

나. 「소득세법」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연장(박형수 의원안)
 -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경감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인상(유동수 의원안)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고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가액 기준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가액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반영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윤창현·유경준·노웅래·조명희 의원안)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노웅래·윤창현·조명희 의원안: 1년 유예, 유경준 의원안: 2년 유예)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김기현·정일영 의원안)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현행 20%)로 인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현행 15%)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다. 「법인세법」

-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추가(박홍근 의원안)
 - 법인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을 허용
 - 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라.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김영진 의원안)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이후 25.3%로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양금희·구자근 의원안)
 - 가업상속공제의 증견기업 요건을 완화하려는 다양한 의원안이 제출되어 논의한 결과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홍석준·권성동·양금희 의원안: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증견기업 5년 이상 계속 경영

- 이영·양금희 의원안: 연 매출액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 김용판 의원안: 연 매출액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5년 이상 계속 경영
- 구자근 의원안: 중견기업(매출액 제한 없음)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장제원·이원택·추경호 의원안)

-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장제원 의원안: 30억원, 이원택·추경호 의원안: 50억원)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어 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공제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박정 의원안)

-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중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바. 「조세특례제한법」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이개호 의원안)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¹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액공제율²⁰⁾을 적용하는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을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로 하되, 연간 기부금액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우원식 의원안)

- 법인이 중소기업현동조합이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19)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인별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 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시 100분의 15, 2천만원 초과 시 100분의 30을 세액 공제하고,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초과 시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하도록 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이상현·배현진·윤후덕·추경호·서일준·권칠승 의원안)
 -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확대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윤후덕 의원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제도의 시행을 2021년 말에서 2023년말로,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6년말로 2년 연장
 - 현행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2021년말까지 시행한 후 2022년부터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 예정이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 유예기간을 2년 연장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추경호 의원안)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공제되는 차기환류적립금의 이월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유경준·이상현 의원안)
 -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이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사. 「증권거래세법」

-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의 상향입법 및 투자자 분류정보 추가(양경숙 의원안)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주권 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2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반영

아. 「관세사법」

-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는 행위 금지(김주영 의원안)
 -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
- 시험 방해행위 금지(추경호 의원안)
 -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하려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공포후 3개월 후로 조정하여 반영

자. 「관세법」

-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 등(고용진 의원안)
 - 동 의원안은 항공기 부품등에 대한 관세 면제 축소 시점을 5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민간항공기 협정대상인 항공기 부분품에 한정하여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 등 위반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현장조사권 확대(류성걸 의원안)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반영

[표 5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대안반영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윤후덕·민형배 의원안)	40억원	(수정반영) 30억원으로 수정
국세통계 작성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추경호 의원안)	국회의원 추가	(원안반영)
「소득세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경감되는 자진신고 기간 연장(박형수 의원안)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자진신고 및 가산세 경감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	(수정반영) 10일로 수정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인상(유동수 의원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가액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원안반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유예(윤창현·유경준·노웅래· 조명희 의원안)	2022.1.1.로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 윤창현·노웅래·조명희 의원안: 2023.1.1.로 1년 유예 - 유경준 의원안: 2024.1.1.로 2년 유예	(수정반영) 2023.1.1.로 1년 유예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김기현·정일영 의원안)	- 김기현 의원안: 난임시술비 30% 공제,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공제 및 공제한도 없음 - 정일영 의원안: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30%	(수정반영) -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 30% -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법인세법」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추가 (박홍근 의원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여 법인이 해당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한도액 내에서 손금 산입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원안반영)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김영진 의원안)	이양비율: ('22년) 23.7% ('23년~) 25.3%	(원안반영)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양금희·구자근 의원안)	- 홍석준·권성동·양금희 의원안: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5년 이상 계속 경영 - 이영·양금희 의원안: 연 매출액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 김용판 의원안: 연 매출액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5년 이상 계속 경영 - 구자근 의원안: 중견기업(매출액 제한 없음) 10년 이상 계속 경영	(수정반영)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10이상 계속 경영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장제원·이원택·추경호 의원안)	(공제한도) - 장제원 의원안: 30억원 - 이원택·추경호 의원안: 50억원	(수정반영) -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 (박정 의원안)	-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 중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	(원안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이개호 의원안)	-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 사업소득자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수정반영) 연간 납입한도 500만원 설정,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하고,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수정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우원식 의원안)	법인이 중소기업현동조합이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원안반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상헌·배현진·윤후덕·추경호·서일준·권철승 의원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국외 제작비용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비용을 추가	(수정반영)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추가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 (윤후덕 의원안)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위해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현행 과세이연하는 제도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제도의 시행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원안반영)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추경호 의원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공제되는 차기환류적립금의 이월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원안반영)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 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유경준·이상헌 의원안)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및 게임영상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 및 경기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수정반영) -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 ·운영시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증권거래세법」		
주권 매매 관련 사항 상향입법 및 투자자 분류 정보 추가 (양경숙 의원안)	주권 매매 관련 사항 - 근거: 시행령 제6조의2 →법 제9조 - 투자자 분류 정보 추가 - 시행: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수정반영) 시행시기 조정: 2022.7.1.이후
「관세사법」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는 행위 금지 (김주영 의원안)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안반영)
시험 방해행위 금지 (추경호 의원안)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시기: 공포 후 즉시	(수정반영) - 시행시기: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관세법」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조정 (고용진 의원안)	- 감면대상: 항공기 부분품 - 완전면제 종료시점: 2026년말 - 감면 종료 시점: 2030년말	(수정반영) - 감면대상: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항공기 부분품 - 완전면제 종료시점: 2024년말 - 감면 종료 시점: 2028년말

안 건	제안내용(개정안)	개 정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현장조사권 확대 (류성걸 의원안)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	(수정반영) 조문이동 (제240조의3→제227조)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

-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총 25건의 주요사항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
 - 「조세특례제한법」 13건, 「소득세법」 4건, 「법인세법」 2건 등

가. 「소득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 도입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의 요청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 국세청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납세조합 조합원에 대한 5% 세액공제에 대해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신설하여 조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개정안 현행 유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정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 및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간 가산세 중복부과 배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

나. 「법인세법」

-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변경대상 명확화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변경대상이 되는 간접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을 명확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대상 명확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대상을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에서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체화

다. 「부가가치세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개정안 현행 유지
 - 「관세법」 상 벌칙 적용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 공제대상을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하고 공제한도 및 금액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에 대한 규정은 유지하되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라. 「개별소비세법」

-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사항 구체화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반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구체화

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류의 통신판매 관련 사항 삭제
 -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삭제

바.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정부안에 추가하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 적용 확대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특례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정부안에 추가하여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도록 수정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수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적용기한(22.12.31.)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분리과세(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9%로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특례 적용기간을 가입일부터 3년간 으로 수정
- 전략적 제후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확대
 - 전략적 제후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정부안에 대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요건 조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가입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로 한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총급여액 기준에 대응되도록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3,80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청년희망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종합소득금액 요건도 총급여액 기준에 맞도록 수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현행)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 농어민·서민형 ISA: (현행)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 청년희망적금: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미반영
 -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과세특례(9% 세율의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정부안에 대해 제도 신설 미반영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정부안에 대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의 추가되는 요건에 지역경제를 고려할 것을 명시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 투자금액과 근무인원 요건을 추가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건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미반영
 - 정부안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12.31.로 신설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미반영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정부는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

-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예정된 대로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일몰을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사. 「관세법」

-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 반품시 관세환급대상 확대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시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통해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금액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 영세납세자를 위한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미반영
 - 관세쟁송시에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 미반영

[표 52]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 국회수정 내용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소득세법」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56조의3)	(공제한도) - 대통령령 위임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정비 등 (제164조의3, 제81조의11제1항제1호, 제164조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정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 신설,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간 가산세 중복부과 배제 신설	미반영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제150조)	(공제한도) - 연 100만원	(공제한도) - 연 100만원 (적용기한) - 2024.12.31.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 확대(제174조의2)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의 요청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금 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2개월 이 내에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법인세법」		
외국납부공제방식 변경대상 명확화 (제57조의2)	(공제방식 변경대상) - 간접투자회사 및 투자신탁	(공제방식 변경대상) - 간접투자회사 및 투자신탁 * 간접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해당되는 기관을 명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대상 명확화 (제94조의2)	(자료제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자료제출 대상)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제35조)	관세법 상 벌칙적용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및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현행 유지) - 수입자의 착오 및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제47조)	(공제한도) - 대통령령에 위임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개별소비세법」		
대통령령 위임사항 구체화 (제20조제1항제1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구체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의 통신판매 관련 사항 삭제(제7조의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주류의 통신판매 관련 규정(안 제7조의2)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제16조의2)	(비과세 한도) - 현행 유지	(비과세 한도) - 5천만원으로 상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6조의4)	(적용대상)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까지 포함 (적용기한) - 2024.12.31.	(적용대상)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도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시가이하 발행차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제26조의2)	(적용기간) -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일부터 5년간 (적용기한) - 2022.12.31.	(적용기간) -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기한) - 2022.12.31.
전략적 제후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확대 (제46조의7)	(특례 대상)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특례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 추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제91조의18)	(농어민·서민형 ISA 가입대상 소득요건)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농어민·서민형 ISA 가입대상 소득요건)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제91조의20)	- 1인당 매입액 2억원 이하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적용 (적용기한) - 2024.12.31.	(미반영)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1)	(가입대상 소득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대상 소득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안 건	정부 세법개정안	개 정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2)	(가입대상 소득요건)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대상 소득요건)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에 지역경제를 고려할 것을 명시(제63조의2)	(감면요건) -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감면요건) -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변경(제96조의3)	(적용기한) - 2022.6.30.	(적용기한) - 2022.12.31.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미반영 (제104조의22)	(적용기한) - 2024.12.31.	(삭제)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제112조)	적용기한을 2021.12.31.에서 2023.12.31.로 2년 연장	적용기한 연장 없이 감면 종료
농협 및 수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제121조의23제10항, 제121조의25제7항)	(적용기한) - 2021.12.31.	(적용기한) - 2023.12.31.
「관세법」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과세환급 대상 확대 (제106의2 제1항)	관세환급 대상 확대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 받은 경우	금액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제126조의2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요건) - 소득·재산 일정기준 이하 영세납세자의 이익신청 등	(삭제)

주: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주류면허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IV

부대의견 및 기타 사항

1 부대의견 채택 안건

가. 「소득세법」 1건

- 2021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 내용이 2021년 설 민생안정 대책(2021.1.20.)에서 기 발표된 사항이며 세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기(통상 12월 초)를 감안할 때 개정안 제출이 늦어 기부금 증대를 도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 추진 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한시 확대(정부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건

-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취지는 인정되나, 물납 미술품 등 현금화 과정에서 국고손실 우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전면적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된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문화재·미술품 물납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허용(박정 의원안)
- 축산농가의 자산인 가축을 영농상속 공제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의원안의 심사 과정에서, 가축의 종류별 추적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되 향후 개선방안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가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장제원·이원택·추경호 의원안)

다. 「조세특례제한법」 6건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을 인상하는 정부안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근로의욕을 저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언급됨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시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 인상(정부안)
- 차세대 성장 분야의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관련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국가전략기술 뿐 아니라 수소·AI·게임 등 지원대상 기술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개진되어 다음 3건의 부대의견 채택
 -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둘째,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기술에 수소 분야 기술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셋째, ‘기획재정부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관련 안건)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공제율 신설(김경만·홍정민 의원안, 정부안),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구자근·김경만·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 신설에 있어 이스포츠경기부 재창단의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실효성,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 추가(유경준·이상헌 의원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기한과 동일하게 1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려는 정부(환경부) 입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연내 최대한 조속히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발표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줄일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권성동·고용진·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라. 「관세법」 3건

-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을 3월말에서 4월말로 늦추는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의 적정성을 내실있게 확인·점검하기 위해 충실하게 매출액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보고할 때 보세판매장별 세관신고 매출액과 기업회계 기준 매출액을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연장(정부안)
- 관세청 통계의 국가통계 승인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관세통계는 실효세율 공개 등에 의한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제소 등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관세통계의 작성·공표로 인해 국제무역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통계의 작성 및 공개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관세통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관세 통계 작성·공표 근거 마련(정부안)
-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TCA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추가 연장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를 부대의견으로 명시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가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관련 안건)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을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고용진 의원안)

[표 53] 부대의견 채택 안건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소득세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 (송언석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 추진 시 조속한 입법을 위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허용(박정 의원안)	의원안 채택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된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문화재·미술품 물납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 (장제원·이원택·추경호 의원안)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가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한액 인상(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시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공제율 신설(김경만·홍정민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구자근·김경만·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기술에 수소 분야 기술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기획재정부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의원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실효성, 남용 가능성

법률명	안건(제안자)	심사결과	부대의견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 추가(이상헌·유경준 의원안)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권성동·고용진·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정부안 채택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연내 최대한 조속히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발표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줄일 것
「관세법」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연장(정부안)	정부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보고할 때 보세판매장별 세관신고 매출액과 기업회계 기준 매출액을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관세 통계 작성·공표 근거 마련(정부안)	정부안 채택	관세청은 관세통계의 작성·공표로 인해 국제무역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통계의 작성 및 공개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관세통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 (고용진 의원안)	수정안 채택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가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기타 사항

□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 탄소세 도입 등은 2021년 개정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제기

[표 54] 미반영 쟁점 항목

주요 내용	찬성측 의견	반대측 의견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강병원·양경숙 의원안)	투기목적 거래의 예방	최근 세율인상('21.6.1.)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선행 필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 (강병원 의원안)	담배에 대한 실질 세율이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기대	-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 -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계층 간 과세 형평성 저해 우려
탄소세 도입 (용혜인·장혜영 의원안)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의 확보	-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접근 필요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홍석준·이영·김용판·권성동 의원안)	- 투자, 고용증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필요 - 현행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완화할 필요	최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및 사후관리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점을 감안할 필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추경호·고용진·박형수 의원안)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	최근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 저해 우려 등
수소산업 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김정재·박홍근 의원안)	신생산업인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이 우려되며, 여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1)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

[표 55] 단기보유 부동산 및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현 행	강병원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보유기간 1년 미만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 -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70%	보유기간 1년 미만 - 80% - 70%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 70%
보유기간 2년 미만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 주택·조합입주권·분양권 60%	보유기간 2년 미만 - 70% - 60%	보유기간 2년 미만 - 60% - 60%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p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20%p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미등기 양도자산: 70%	90%	-

□ 최근 개정 연혁

- 2017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신설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18.4.1.시행)
 - 양도소득세율: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기본세율+20%p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 적용 불가
- 2020년 8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시행)
 -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기본세율+30%p,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주택·조합입주권) 1년/2년 미만: 40%/기본세율 → 70%/60%
 -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50%(기타지역 기본세율) → 1년/2년 미만: 70%/60%
 - (주택 외 부동산) 1년/2년 미만 50%/40% 세율 유지

□ 세수효과

◦ 추정곤란

- 향후 단기보유 부동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건수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리적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투기목적의 거래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이 시행(21.6.1)된 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없이 세율을 인상하는 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
- 토지 등의 단기보유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투기로 단정짓고 비투기자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등이 제기

(2)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되, 담배의 종류별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궤련담배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1%p 추가
- 개정취지: 담배에 대한 실질세율을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궤련의 경우 위해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세율을 더 높게 설정하여 흡연을 감소 도모

[표 56]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안

	강병원 의원안
담배 개별소비세율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담배 개별소비세율 = 직전연도 세율 × (1 + 직전연도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궤련담배의 경우 직전연도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p 추가

□ 세수효과

- (2022년) 670억원 (연평균) 1,832억원 (2022~2026년) 9,160억원

□ 주요 논의 사항

- 담배에 대한 실질 세율이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려는 취지
-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물가연동제 도입 시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계층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견

(3) 탄소세 도입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배출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 개정취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

[표 57] 탄소세 도입안

	용혜인 의원안	장혜영 의원안
법률안의 목적	탄소중립 실현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 장혜영 의원안의 과세대상에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코크스 추가	-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 기존 과세대상(휘발유, 경유)에 등유, 중유, 프로판·부탄, 천연가스, 석유 부산물, 유연탄, 무연탄 추가
세율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 ²¹⁾ 당 '21년 4만원~'25년 8만원(순차인상)	이산화탄소 톤당 '22년 5.5만원 ~ '30년 11만원에 해당하는 탄소세를 리터, 킬로그램 등의 단위로 부과
면세	현행 면세대상 중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제조용 등 일부 제외	현행과 같이 규정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하는 경우 환급 또는 공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받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21)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 세수효과

- 용혜인 의원안: (2022년) 31.1조원 (연평균) 46.0조원 (2022~2026년) 229.8조원
- 장혜영 의원안: (2022년) 14.3조원 (연평균) 19.4조원 (2022~2026년) 97.2조원

□ 주요 논의 사항

- 정부는 탄소세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²²⁾의 결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표명
- 심사과정에서 탄소세가 교정적 조세인 피구세(Pigouvian tax)에 해당하는 만큼 외부 불경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입법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기

(4) 기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개정취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 확보

22) 2021년 3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행 에너지세제와 연계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2021년 말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임

[표 58] 기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주요 개정안

		현행	홍석준 의원안	이영 의원안	김용판 의원안	권성동 의원안
공제한도액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 500억원	5~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 500억원	10~20년: 500억원 20~30년: 700억원 30년 ~: 1천억원	5~20년: 400억원 20~30년: 600억원 30년 ~: 1천억원	5~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 500억원
사 후 관 리	사후관리 기간	7년	5년	-	5년	5년
	기업용자산 보유 요건	7년간 20% (5년 10%) 처분시 추징	5년간 50% 처분시 추징	-	5년간 40% (2년 20%) 처분시 추징	-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	80%	-	-	60%	삭제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	7년간 상속당시 유지	5년간 상속당시 유지	-	5년간 상속당시 유지	5년간 상속당시 80% 유지

□ 최근 개정 연혁

- 2014년 이전에는 기업요건(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및 공제한도(1억원 → 200~500억원)를 중심으로 확대, 그 이후 사후관리 기간(10년 → 7년) 및 요건 완화(고용유지) 중심으로 개정

[표 59]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요건 연혁

구분	~2007	2008	2009	2011	2013	2014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파생속인의 계속경영기간	5년	15년	10년			

[표 60] 기업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혁

구분	~2007	2008	2009	2012	2014~
공제율	100%	20%	40%	70%	100%
공제한도	1억원	30억원	60~100억원	100~300억원	200~500억원

[표 6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연혁

구 분	1997	2008	2011	2014	2017	2018	2019	2020
사후관리기간	5년	10년						7년
기업용 자산 유지	처분 금지	기업용 자산 10년 내 20%(5년 내 10%) 처분 금지						
기업에 종사	기업에 종사할 의무							
주식지분 유지	-	상속인 지분 유지 의무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경우 예외 인정		
연도별 고용유지 요건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80% 유지 의무				각 사업연도말 기준고용 인원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의 80% 유지 또는 기준총급여액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의 80% 유지	
전체기간 고용유지 요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100%(중견기업 120%) 유지 의무				7년간 기준고용인원의 100% 유지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 유지	
추징액	공제액 전액 추징		기간별 추징률 반영		이자상당액 부과		자산처분 비율고려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기업상속공제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분 등에 대한 가용자료 부재

□ 주요 논의 사항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엄격하고 공제 한도 등이 낮아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원안을 심도 있게 논의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
 - (찬성측 의견) 투자, 고용증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며,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완화할 필요
 - (반대측 의견) 2019년 세법개정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는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및 사후관리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된 점에 감안할 필요
- 국회 심의 결과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우회적인 상속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현행 유지하기로 하고, 공제 한도 상향 역시 추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하기로 함

(5)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특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2020년 개정 이전 세율로 적용하는 특례 신설
- 개정취지: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

[표 62]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강화에 대한 주요 개정안

	현행	추경호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	박형수 의원안
합산 배제 임대 주택	(요건) - 임대주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20.7.11.이후 등록신청한 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행령 규정	(요건) - 폐지 - 폐지 -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법률로 상향	-	-
서울 특례	-	-	(요건)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임대의무기간 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특례내용) - 2020년 개정이전 서울 적용 *현행 6% → 개정안 0.6~3.2% (다주택 기준)	(요건) - 법인이 임대의무기간 이상 전용면적 149㎡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특례내용) - 2020년 개정이전 서울 적용 *현행 6% → 개정안 0.6~3.2% (다주택 기준)

□ 최근 개정 연혁

-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2018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강화
 - 임대료 증가율에 대한 요건을 도입하고, '20.7.11.이후 등록신청한 민간임대주택과 다주택자 및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등록신청한 장기일반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 ※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세부담 증가
- (서울특례 관련)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주택분 세부담 강화
 - 법인은 주택분 과세기준액과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6단계 초과누진세율에서 개인기준 최고구간의 세율을 비례세율로 적용
 - ※ 서울: (기존) 1~2주택²³⁾ 0.5~2.7%/ 3주택 이상 0.6~3.2% 초과누진세율
(현행) 1~2주택 3%/ 3주택 이상 6% 비례세율

23) 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간주

[표 63] 법인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 및 세율 연혁

구분	~2018		2019~2020			2021~	
과세기준액	6억원		6억원			미적용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세율(%)	
				1~2 주택	3주택 이상	1~2 주택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0.5	0.6	3	6
	3~6억원		3~6억원	0.7	0.9	*과표구간 관계없이 적용	
	6~12억원	0.75	6~12억원	1.0	1.3		
	12~50억원	1.0	12~50억원	1.4	1.8		
	50~94억원	1.5	50~94억원	2.0	2.5		
	94억원 초과	2.0	94억원~	2.7	3.2		
			*개인과 동일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개별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유임대주택 공시가격 등에 대한 가용자료 부재

□ 주요 논의 사항

-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의 운영비용 증가
 - 임대주택 사업자의 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축소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둔화와 주택시장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2021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가액기준이 완화되었으나, 개정 이후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효성 논란
- 임대주택 사업자의 합산배제 요건 완화 및 세율특례를 도입하는 의원 발의안이 제기되었으나, 정책의 일관성 저해 및 세부담 소급 경감에 대한 우려에 따라 미반영
 -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발의
 -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재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존재
 - 세율특례와 관련하여 이미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세부담을 소급하여 경감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존재

(6)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관련 의안 및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취지: 수소산업 육성

[표 64]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한 주요 개정안

	현행	김정재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공제대상	(신설)	- 수소 생산시설 - 이차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 - 수소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의 시설과 액화수소를 저장·운송하는 시설 등	- 수소 생산시설 - 수소를 충전·공급하는 시설 - 수소를 연료로 하는 전력생산 시설 - 수소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의 시설과 액화수소를 저장·운송하는 시설 등
공제액	(신설)	- 기본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6% * 중견 8%, 중소 16% - 추가공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초과분의 4% * 한도: 기본공제 2배	- 기본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6% * 중견 8%, 중소 16% - 추가공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초과분의 4% * 한도: 기본공제 2배
적용기한	(신설)	-	2026.12.31.

□ 세수효과

- 추정 곤란
 - 향후 수소산업의 시설투자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추정 곤란

□ 주요 논의 사항

- 2021년 2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주요부문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의원안 발의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별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문제와 여타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과의 과세형평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미반영
 - 찬성입장은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라는 측면에서 세제지원 필요성 강조

- 반대입장은 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소 생산시설 등 설비투자에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할 경우, 수소 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3 기타 추후 논의 과제

□ 근로장려세제 개선 항목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제도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이 주요국 대비 높고 점감기간 확대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제도 개편은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제개편 시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

□ 국가전략기술 등 신산업·국가성장동력 관련 세제지원 항목

- 신산업·국가성장동력 관련 세제지원 대상 기술 및 산업의 범위(예:수소, AI, 게임 산업 등),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 이와 관련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방안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고,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채택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기술에 수소 분야 기술 등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

□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항목

- 2020년 세법 개정시 국회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 및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2021.11.17.)
 - (2020년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 정기 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 (2021.11.12.)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 (2021.11.17.) 조세소위원회 안건 심사 전 정부의 부대의견 관련 보고
-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이슈는 근본적인 상속세 제도개편과 연계되어있으므로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
 -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정부는 부의 집중 완화, 소득세 면세자 비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의 납세자가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의 보완 성격이 있는 상속세 세율 조정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해외 상속세 단일세율 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며 정부 입장이 아닌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의견 제시
 -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은 상속세 제도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므로 방식을 전환한 해외 사례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

□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저탄소 경제 전환 등 환경 관련 항목

- 올해 발의된 탄소세 도입 관련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안, 210873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안, 2111470)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계류
 - 장혜영 의원안: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및 법률명을 「탄소세법」으로 개정,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무연탄, 액화천연가스 등을 추가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당 11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
 - 용혜인 의원안: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당 세율은 2021년 4만원에서 2025년 8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1.11.26.) 기후변화 이슈 관련 탄소세 도입 등 세제개편안은 공청회 개최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규제와 재정·금융 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과 관련 올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었으나, 환경부 등 친환경 자동차 분류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함에 따라 친환경차 분류체계 마련 필요
 - (부대의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연내 최대한 조속히 친환경차 분류체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발표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줄일 것'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부 록

- 확정된 2022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1 2022년 총수입

- 2022년 총수입은 정부안(548.8조원) 대비 4.7조원이 증액된 553.6조원으로 확정, 2021년 추경예산(514.6조원) 대비 39.0조원(7.6%)이 증가한 수준
- 국세수입 343.4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29.1조원 증가
 -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법인영업실적 개선 및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의 증가가 예상
 - 세외수입 26.1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3.2조원 감소
 - 기후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배출권매각대 수입 이전 등의 영향으로 경상이전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 예상
 - 기금수입 184.1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13.1조원 증가
 - 경기회복에 따른 보수월액 상승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사회보장기여금과 재산수입을 중심으로 한 기금수입 증가 예상

[표 65] 확정된 2022년 총수입 예산

(단위: 조원)

	2020 실적	2021		2022 확정 예산	추경 대비	
		본예산	추경			(%)
총수입	478.8	482.6	514.6	553.6	39.0	7.6
국세수입	285.5	282.7	314.3	343.4	29.1	9.3
세외수입	26.9	28.9	29.3	26.1	-3.2	-11.0
기금수입	166.2	171.0	171.0	184.1	13.1	7.7
- 사회보장기여금	74.6	77.0	77.0	80.1	3.0	3.9

주: 2021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정부안 대비 변동 내용

가. 총수입

- 2022년 총수입은 553조 5,50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548조 8,301억원)에서 4조 7,202억원 증액
 - 국세수입은 343조 3,83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4조 7,349억원 증액
 - 세정지원에 따른 납부유예분(6조 2,280억원)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2조 326억원) 등을 반영하여 증액
 - 세외수입은 26조 72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6,085억원 감액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2,954억원)과 기타 민간용자원금 회수(-2,818억원) 등을 감액
 - 기금수입은 184조 939억원으로 당초 예산안에 비해 5,938억원 증액
 -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주부담금(2,964억원) 및 피고용자분담금(2,964억원) 등 증액

[표 66] 2022년 총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2021		2022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총수입	4,826,006	5,145,656	5,488,301	47,202	5,535,503
국세수입	2,827,425	3,142,816	3,386,490	47,349	3,433,839
세외수입	288,647	292,906	266,810	-6,085	260,725
기금수입	1,709,934	1,709,934	1,835,001	5,938	1,840,939

주: 2021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국세수입

- 2022년 국세수입은 343조 3,839억원으로 정부안(338조 6,490억원) 대비 4조 7,349억원 증액
-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년도수입, 관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는 증액된 반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는 감액됨
 - 집합금지 업종, 중소기업, 경영애로 수입업체 등에 대한 납기 연장 등으로 2021년 징수분 일부가 2022년 국세수입에 반영되어 6조 2,280억원 증액
 -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2조 326억원 감액

[표 67] 2022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2021		2022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총국세	2,827,425	3,142,816	3,386,490	47,349	3,433,839
일반회계	2,740,226	3,046,421	3,285,760	43,903	3,329,663
◦ 내국세	2,395,647	2,701,842	2,912,630	48,640	2,961,270
1. 소득세	898,160	994,743	1,050,020	7,997	1,058,017
2. 법인세	533,054	655,465	737,810	11,570	749,380
3. 상속·증여세	90,999	119,298	131,260		131,260
4. 부가가치세	666,531	693,474	760,540	14,246	774,786
5. 개별소비세	100,655	100,655	102,040	-622	101,418
6. 증권거래세	50,861	82,820	75,380		75,380
7. 인지세	9,467	9,467	9,480		9,480
8. 과년도수입	45,920	45,920	46,100	15,449	61,549
◦ 교통·에너지·환경세	156,903	156,903	167,570	-13,765	153,805
◦ 관세	83,472	83,472	84,580	2,771	87,351
◦ 교육세	53,066	53,066	54,680	-1,271	53,409
◦ 종합부동산세	51,138	51,138	66,300	7,528	73,828
특별회계	87,199	96,395	100,730	3,446	104,176
◦ 주세	32,492	32,492	33,940	3,434	37,374
◦ 농어촌특별세	54,707	63,903	66,790	12	66,802

주: 2021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세외수입

- 2022년 세외수입은 26조 725억원으로 정부안(26조 6,810억원)에 비해 6,085억원 감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 등을 조정
 - 2022년 국내 석유수요 둔화 전망 등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기타민간용자원금 등을 감액

[표 68] 2022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2021		2022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세외수입	288,647	292,906	266,810	-6,085	260,725

주: 2021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기금수입

- 2022년 기금수입은 184조 939억원으로 정부안(183조 5,001억원)에 비해 5,938억원 증액
 -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에 2022년 7월부터 적용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하여 조정
 -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 인상계획 반영

[표 69] 2022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단위: 억원)

	2021		2022		
	본예산	추경	정부안	증감	최종
기금수입	1,709,934	1,709,934	1,835,001	5,938	1,840,939

주: 2021년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발간일	2021년 12월 24일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tel 02·786·2999)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BN 979-11-6799-035-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923-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